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25호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애향·봉사장

3. 산업장

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동장

6. 시민안전장

7. 보건환경장

8. 교육장

9. 농림수산물장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체육장은 문학·미술·음악·연극·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활동 및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체위 향상 및 시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한 자
2. 애향·봉사장은 군산시 출신으로써 향토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공공사업, 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
3. 산업장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 수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자
4. 노동장은 사업장·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직무에 충실하고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 향상, 노동자의 권익신장,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자
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효녀·효부
6. 시민안전장은 재난 발생시 피해저감 노력과 함께 시민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 도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재난 예방 활동에 기여한자
7. 보건환경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자
8. 교육장은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자
9. 농림수산업장은 농업·축산·수산·임업분야에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자

제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 중 “기관장·기업체장·사회단체장·대학교총장”을 “기관장·기업체장·사회단체장·대학교총장·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민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하는 때에는 시민 30명의 연서와 함께 수상자를 추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결정에 시민참여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기념사업) 시장은 역대 시민의 장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별표 1 (군산시시민의장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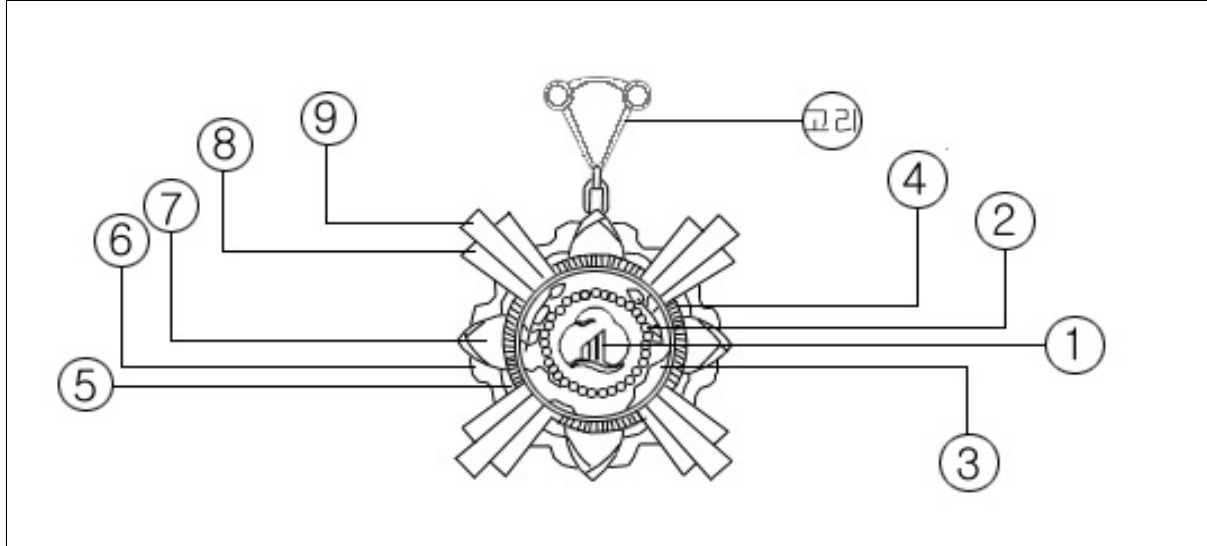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1]<개정2005.02.05, 2007.10.30, 2013.12.12>

군 산 시 시 민 의 장 제 식

(전 면)



구 분	형	칫 수	색	채	재 료	비 고
	①휘장	14mm	은색		동	남색,녹색버틸
	②	18mm	금색			
	③	24mm	금색			
	④	28mm	금색			
	⑤	32mm	은색			
	⑥	40mm	금색			
	⑦ <개정200 5.02.05>	44mm	꽃봉오리 끝 부분 흰색 칠보, 아랫부분 문화·예술·체육장 홍색 칠보 애향·봉사장 청색 칠보, 산업장 남색 칠보 노동장 하늘색 칠보, 효열장 황색 칠보 시민안전장 자주색 칠보, 보건환경장 흰색 칠보 교육장 주황색 칠보, 농림수산장 금색 칠보			은색으로 외 선
	⑧	50mm	금색			불림처리
	⑨	58mm	금색			평 면
고리		가로 18mm 세로 16mm	금색			장식부분 흰색칠보
수			남색, 적색, 담황색, 흰색		전직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민의장) 시민의장과 시 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u>공익·봉사·애향장</u> 3. <u>경제·산업·근로장</u> <신설>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조(시민의장) ----- -----. 1. (현행과 같음) 2. <u>애향·봉사장</u> 3. <u>산업장</u> 4. <u>노동장</u>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u>시민안전장</u> 7. <u>보건환경장</u> 8. <u>교육장</u> 9. <u>농림수산장</u>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u>문화·예술·체육장은 향토 문화 창달과 직필정론으로 지역 여론의 올바른 정립 및 예술의 창의적 창작 활동과 시민체위 향상 및 시 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자</u> 2. <u>공익·봉사·애향장은 시민 복지수준의 전반적 향상으로 삶의질 개선등을 위한 공익사업과 자선사업 또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u>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u>문화·예술·체육장은 문학·미술·음악·연극·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활동 및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체위 향상 및 시 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한 자</u> 2. <u>애향·봉사장은 군산시 출신으로써 향토발전과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공공사업, 사회산업, 기타 봉</u>

향상과 군산시 출신으로써 향
토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기
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경제·산업·근로장은 대규
모 투자 또는 산업시설을 유
치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거나
근로자들의 권익신장과 선진
화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생
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높은 업
적이 있는자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사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
해 헌신봉사한 자

3. 산업장은 일자리 창출과 투
자유치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 수출 등 지역경
제 발전에 기여한자

4. 노동장은 사업장·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직무에 충실하고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 향
상, 노동자의 권익신장,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한자

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효녀·효
부

6. 시민안전장은 재난 발생시
피해저감 노력과 함께 시민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 도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재난 예방 활동에 기여한자

7. 보건환경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과 질병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자

8. 교육장은 교육발전에 헌신적
으로 노력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자

9. 농림수산장은 농업·축산·
수산·임업분야에서 농림수산
업 발전에 기여한자

제4조(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6조(추천) 시민의장 수상 후보자
는 기관장·기업체장·사회단
체장·대학교총장이 추천한다.

<후단 신설>

제4조(심사위원회)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추천) -----
기관장·기업체장·사회단체장
·대학교총장·시민-----

제7조(수상자 결정) (생 략) <u><신 설></u> 제9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u>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u> <u>를 받은 자</u> 2. (생 략) <u><신 설></u> <u>제16조</u> (생 략)	- <u>다만 시민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하는 때에는 시민 30명의 연서와 함께 수상자를 추천한다.</u> 제7조(수상자 결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심사위원회는 수상자 결정에 시민참여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 제9조(수상후보자 제한) --- 각호 ----- -----. 1. <u>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u> 2. (현행과 같음) <u>제16조(기념사업) 시장은 역대 시민의 장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제17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26호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군산경찰서장, 군산교육장, 군산소방서장,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군산경찰서장, 군산교육장, 군산소방서장,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군산보호관찰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협의회 구성) ① (생략) ② -----, <u>당연직 위원은 시장,</u> <u>시의회 의장, 군산경찰서장, 군산</u> <u>교육장, 군산소방서장, 고용노동부</u> <u>군산지청장이 되며, -----.</u>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당연직 위원은 시장,</u> <u>시의회 의장, 군산경찰서장, 군산</u> <u>교육장, 군산소방서장, 고용노동부</u> <u>군산지청장, 군산보호관찰소장이</u> <u>되며, -----.</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27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u>영 제85조의3</u>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신고의무) ① ----- ----- <u>영 제85조의4</u> ----- -----.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28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을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2제4항 및”을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으로, “부분”을 “본문”으로, “감면 기간”을 “재산세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 및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15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 및 공제한다.

제6조제2호 중 “경우 산정 된 세액 및 금액의 전부를 10년간”을 “경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으로 한다.

제8조 중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 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 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 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 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 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 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 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 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 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 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 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 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 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 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 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 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	

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기한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

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경우 산정된 세액 및 금액의 전부를 15년간 감면 및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의 경우 산정된 세액 및 금액의 전부를 10년간 감면 및 공제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
----- 본문 -----
재산세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 및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15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 및 공제한다.

2. -----
---- 경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29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시의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상임이사의 임무) 상임이사는 사무국장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타운매니저와 직원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한다.

④ 타운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상권활성화사업 운영 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전통시장 및 상인조직의 출연금
5. 재단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

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시의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인
2. 도시·건축·디자인·경영·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상권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타운매니저로 한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6조(확인·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30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군산시 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5호 중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500인**”을 “**300명**”으로, “**200인**”을 “**200명**”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이전하여 항상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면**”을 “**이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생산자서비스업”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생산자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집단화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제18조제3항 본문 중 “이전에”를 “이전(집단화이전 포함)에”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18조의3 본문 중 “20인”을 각각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18조의4 본문 중 “20인이상”을 “20명이상”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을 “국내 기업이 군산시 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지, 건축물을 제외한 신규 투자금액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의2 중 “100인”을 “100명”으로 한다.

제19조의5의 제목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별)”를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

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본문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지원특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 기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관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집단화”라 함은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시내에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평상시 고용인원이 제조업은 500인 이상, 관광사업은 2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6. ~ 28. (생략)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군산시 내에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 15. ----- ----- 이상이거나, ----- ----- 300명 ----- -- 200명 -----. 16. ~ 28.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은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항상 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명당 ----- ----- -----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항상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당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
----- 이전하는
경우 -----

-----.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생산자서비스업--
3. 집단화이전하면서 상시고용

② (생 략)

③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임
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5
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
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
다.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내
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평상
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
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
다.

1. · 2. (생 략)

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
업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전(집
단화이전 포함)에 -----

-----.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

----- 30명 -----

-----.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 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 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u>20인</u> 이상 신규채용하여 항상 고용하 는 경우 <u>20인</u> 을 초과하는 인원 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 의 고용보조금은 <u>1인당</u> 월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3(고용보조금) ----- ----- ----- ----- <u>20명</u> ----- ----- <u>20명</u> ----- ----- ----- ----- ----- ----- ----- <u>1명당</u> ----- -----.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 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 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u>20</u> <u>인</u> 이상 신규채용하여 항상 고용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 <u>20인</u> 을 초과하는 인원 에 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 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 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u>1</u> <u>인당</u>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 다.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 ----- ----- ----- <u>20</u> <u>명이상</u> ----- ----- ----- <u>20명</u> ----- ----- ----- ----- ----- ----- ----- <u>1</u> <u>명당</u> ----- -----.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u>전라북도</u> <u>외에</u>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u>국내 기업이</u> <u>군산시 내에</u> 대규모로 투자하는

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상시 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시내 기존기업의 투자 촉진장려금) 시장은 시내기업

-----.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지, 건축물을 제외한 신규 투자금액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단서 삭제>

제19조의2(시내 기존기업의 투자 촉진장려금) -----

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 투자규모 30
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공
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
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제19조의5(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생략)

②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
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
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전라북
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
례」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
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

----- 100명 -----

제19조의5(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
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
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
원할 수 있다.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
원) -----

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제35조 ~ 제38조 (생략)

----- 3
0명 -----

제35조(지원특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 기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관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제36조 ~ 제39조 (현행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31호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청년협의체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청년센터 운영 및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군산시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6. 제7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협조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와 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2조(청년협의체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청년센터 운영 및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군산시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6. 제7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협조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를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
를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
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협의체

-----.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32호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

제6조(관리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시장은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은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시설) 시장은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정한 교육 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 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심벌마크 활용)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특산품

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그 밖의 사항

제13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질공원을 보전·관리 및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33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을 “개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경일 및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금품 지급 및 위로·격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보훈대상자,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u><신설></u> 6. · 7. (생략)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개최</u> 6. <u>국경일,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격려</u> 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34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수당”이란 보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말한다.
3. “단체”란 보훈단체를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별표 제1호의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당지급) ①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매 분기 다음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

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별표 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의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2019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408)는 폐지한다.

[별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액
참전명예수당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6만원
보훈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만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만원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당 지급을 위한 기간동안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합니다.

※ 단, 명예수당 지급이 중지될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삭제 요청시 즉시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또는 삭제□)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그 밖에 의문사항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454-4122)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유공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단체명 (직인)

군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당 지급을 위한 기간동안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합니다.

※ 단, 명예수당 지급이 중지될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삭제 요청시 즉시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또는 삭제□)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사망일자기재) 각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그 밖에 의문사항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454-4122)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와 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35호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한 장애 : 150만원 이내
2.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이내

제4조제2항 단서 중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를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액) ①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u>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u>	제4조(지원액) ①----- ----- ----- ----- . <u>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u>
1. <u>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u> <u>우</u> <u>가. 장애등급 1급내지 2급 :</u> <u>150만원 이내</u> <u>나. 장애등급 3급내지 4급 :</u> <u>100만원 이내</u> <u>다. 장애등급 5급내지 6급 :</u> <u>70만원 이내</u>	1. <u>심한 장애 : 150만원 이내</u> <u>가. 삭제</u> <u>나. 삭제</u> <u>다. 삭제</u>
2. <u>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u> <u>우</u> <u>가. 장애등급 1급내지 2급 :</u> <u>100만원 이내</u> <u>나. 장애등급 3급내지 4급 :</u> <u>70만원 이내</u>	2. <u>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이내</u> <u>가. 삭제</u> <u>나. 삭제</u>
②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②----- ----- -----

현행	개정안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u>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u>	----- . <u>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u>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36호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별지 제6호 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내용 중 “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 표시) <table border="1"> <tr> <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td></tr> <tr> <td>주소</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3">자택 : 휴대전화 :</td></tr> <tr> <td>장애명</td><td></td><td>장애등급</td><td colspan="3"></td></tr> <tr> <td>수급유형</td><td colspan="5">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td></tr> </table>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 표시) <table border="1"> <tr> <td>보장구 유형</td><td colspan="5">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td></tr> <tr> <td>수리가 필요한 부위</td><td colspan="5">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td></tr> </table>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table border="1"> <tr> <td>※구비서류: 없음</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장애명		장애등급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장애명		장애등급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																																							
연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table border="1"> <tr> <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td></tr> <tr> <td>주소</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3">자택 : 휴대전화 :</td></tr> <tr> <td>장애명</td><td></td><td>장애등급</td><td colspan="3"></td></tr> <tr> <td>수급유형</td><td colspan="5">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td></tr> <tr> <td>보장구 유형</td><td colspan="5">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해당 유형에 체크) </td></tr> <tr> <td>수리 의뢰내역</td><td colspan="5"></td></tr> </table>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확인자 : 00읍·면·동주민(행정복지)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장애명		장애등급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해당 유형에 체크)					수리 의뢰내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장애명		장애등급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해당 유형에 체크)																																						
수리 의뢰내역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 표시) <table border="1"> <tr> <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td></tr> <tr> <td>주소</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3">자택 : 휴대전화 :</td></tr> <tr> <td>장애명</td><td></td><td>장애정도</td><td colspan="3"></td></tr> <tr> <td>수급유형</td><td colspan="5">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td></tr> </table>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 표시) <table border="1"> <tr> <td>보장구 유형</td><td colspan="5">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td></tr> <tr> <td>수리가 필요한 부위</td><td colspan="5">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td></tr> </table>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table border="1"> <tr> <td>※구비서류: 없음</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																																							
연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table border="1"> <tr> <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td></tr> <tr> <td>주소</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3">자택 : 휴대전화 :</td></tr> <tr> <td>장애명</td><td></td><td>장애정도</td><td colspan="3"></td></tr> <tr> <td>수급유형</td><td colspan="5">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td></tr> <tr> <td>보장구 유형</td><td colspan="5">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해당 유형에 체크) </td></tr> <tr> <td>수리 의뢰내역</td><td colspan="5"></td></tr> </table>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확인자 : 00읍·면·동주민(행정복지)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해당 유형에 체크)					수리 의뢰내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해당 유형에 체크)																																						
수리 의뢰내역																																							

현행		개정안		
담당 (서명 또는 인) (○○○ 수리업체장) 귀하		(○○○ 수리업체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리기사 성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생년 월일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주소	장애명 / 등급		
보장구 수리 내역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청구금액	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 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 부		수수료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없음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 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 부		수수료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없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37호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를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어린이”란”을 ““아동”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 행복도시”란 어린이”를 ““아동 친화도시”란 아동”으로, “어린이의”를 “아동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를 “아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각각 “아동 친화도시”로, 같은 항 중 “어린이”를 “아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 기준)”을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를 각각 “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린이는”을 각각 “아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을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를 각각 “아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들”을 “아동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어린이”를 “아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을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를 각각 “아동”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어린이 건강증진)”을 “(아동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어린이”를 “아동”으로 한다.

제9조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각각 “아동 친화도시”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제안·심의한다”를 “제안·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각각 “아동 친화도시”로, 같은 호 중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를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각각 “아동 친화도시”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린이·아동”을 “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어린이·아동”을 “아동”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u> <u>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u>어린이 행복도시</u>를 조성함으로써 <u>어린이가</u>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어린이</u>"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2. "<u>어린이 행복도시</u>"란 어린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u>어린이의</u>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어린이</u>	<u>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u>에 관한 <u>조례</u> 제1조(목적) ----- ----- ----- <u>아동 친화도시</u>를 조성함으로써 <u>아동이</u> ----- ----- 제2조(정의) ----- -----. 1. "<u>아동</u>"이란 ----- ----- 2. "<u>아동 친화도시</u>"란 <u>아동</u>----- ----- <u>아동의</u>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아동이</u> ---

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행복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행복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아동 친화도시 -----
 -----.

② ----- 아동-----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 아동 친화도시 -----

 -----.

1. 아동 친화도시-----

 2. 아동 친화도시-----
 --
 3. 아동 친화도시-----

 4. 아동 친화도시 -----

 5. ----- 아동 친화도시-----

- ② ----- 아동 친화도시 -----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는 교육·여가·문화 생활·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

----- 아동-----
-----.

제5조(아동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 아동 친화도시-----

-----.

1. --- 아동이 -----
-----.
2. 아동-----
----- 아동-----
-----.
3. 아동은 -----

-----.
4. 아동은 -----

5. 아동은 -----

-----.

다.

6. 어린이가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 시설) ①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행 편의
2.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3. 어린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 5. (생략)
6. 어린이 동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

② (생략)

제7조(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환경 및 범죄 예방 안

6. 아동이 -----

-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① -----

-----.

1. 아동 -----
2. 아동-----
3. 아동들-----

4. · 5. (현행과 같음)
6. 아동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
---- 아동이 -----

-----.

1. 아동 -----

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어린이 건강증진) 시장은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어린이 행복도시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어린이 행복도시 구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행복도시 구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행복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행복도시와 관련된

2. 아동 -----

제8조(아동 건강증진) -----
아동이 -----
 ----- 아동-----
 -----.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
아동 친화도시 -----
 -- 아동 친화도시 -----

 -.

제10조(기능) ----- 아동 친화도시
시 -----
 -- 제안·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 친화도시 -----2. 아동 친화도시 -----
 --- 수립·시행-----
 -----3. 아동 친화도시-----

 -----4. 아동 친화도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생 략)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민·관
공동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장
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고 당
연직 위원은 복지관광국장으로
한다.

1. 어린이 행복도시 구성에 관
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
람

2. 어린이·아동과 관련된 기관
· 단체의 대표자

3. ~ 5. (생 략)

6. 어린이 행복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④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5.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

③ -----

-----.

1. 아동 친화도시 -----

2. 아동-----

3. ~ 5. (현행과 같음)

6. 아동 친화도시 -----

<삭 제>

제12조(임기) -----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어린이·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
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린이 행복도시 업무담
당 과장이 된다.

② (생 략)

---- 아동-----

-----.

제14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아동 친화도시 -----

-----.

제16조(간사) ① -----

아동 친화도시 -----
-----.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38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군산시관광진흥협의회”를 “군산관광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산관광진흥협의회”를 “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산관광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앞에 “제3장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삽입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위원의 임기)”를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관광국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중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장이 불가피”로, “때에는 부위원장이”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회의 및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안전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전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앞에 “제3장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을 삭제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을 삽입한다.

제20조(종전의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4장 관광사업 보조금”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5조로 한다.

제4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시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4. 시 각종 축제(행사) 참가자 또는 관련 대회 시상자에 대한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5. 스탬프투어 완주자에 대한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앞에 “제5장 관광사업 보조금”을 삽입한다.

제6장(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제28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30조(안내소의 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대상지역 관광홍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4.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제31조(안내소의 운영)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관광안내원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제3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위탁대상 업무) ① 제3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광역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 여행업체를 말한다.	4. -----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항제1호 ----- -----. -----.
5.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5. ----- “법” -- ----- ----- ----- ----- -----.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2장 군산시관광진흥협의회	제2장 군산시관광협의회
제4조(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① ----- ----- ----- ----- ----- 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관광협의회

<신 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광진흥과 관련하여 시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은 관광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 및 학계, 관광업계 언론계 등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 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장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
은 복지관광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
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

③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하
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
리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
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
다.

<신 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제12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

제3장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제12조 (생 략)

제13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① 제12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제1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여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② (생 략)

제14조 (생 략)

제15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제16조 (생 략)

제17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대상) 제1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6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① 제15조-----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제1항제1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8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제17조-----

--.

1. ~ 3. (현행과 같음)

제4장 관광 및 축제 홍보 지원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20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대상) 제19조-----

-----.

1. · 2. (생 략)

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4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21조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25조 ~ 제27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35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4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 · 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
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시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
에 참가하는 사람

4. 시 각종 축제(행사) 참가자
또는 관련 대회 시상자에 대
한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5. 스탬프투어 완주자에 대한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u><신 설></u> <u><신 설></u>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제5장 관광사업 보조금</u> <u>제6장 관광안내소 설치 및</u> <u>운영</u>
<u><신 설></u> <u><신 설></u>	<u>제28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u> <u>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u> <u>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u> <u>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u> <u>“안내소”라 한다)를 설치·</u> <u>운영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u> <u>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u> <u>다.</u>
<u><신 설></u> <u><신 설></u>	<u>제30조(안내소의 기능) 안내소의</u> <u>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내·외국인 대상지역 관광홍</u> <u>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u> <u>공</u> <u>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u> <u>수집·관리 및 제공</u> <u>3.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u> <u>관광산업 정보 제공</u> <u>4.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등</u> <u>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u> <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u>
<u><신 설></u>	<u>제31조(안내소의 운영) 안내소의</u>

<신 설>

<신 설>

<신 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관광안내
원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
객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안내
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
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제3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
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진흥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위탁대상 업무) ① 제32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
한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
모전
6. 광역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

<신 설>

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39호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 1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의 2. 체력단련실 사용료 비고란의 “1,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보호자"란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동행한 사람을 말한다. 7. ~ 10. (생략)	제3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 ~ 10. (현행과 같음)																																																				
【별표 1】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별표 1】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1. (생략) 2. 체력단련실 사용료	1. (현행과 같음) 2. 체력단련실 사용료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사 용 료(원)</th><th rowspan="2">비 고</th></tr><tr><th>1회/1일</th><th>1개월</th></tr><tr><td>장애인</td><td colspan="2">무 료</td><td rowspan="3">1, 2급장애인과 3 급 중 복 장 애 인 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td></tr><tr><td>어린이</td><td rowspan="2">1,000</td><td>20,000</td></tr><tr><td>65세 이상 노인</td><td>0</td></tr><tr><td>청소년</td><td>1,500</td><td>25,000</td><td rowspan="2">0</td></tr><tr><td>성인</td><td>2,000</td><td>30,000</td></tr><tr><td></td><td></td><td>0</td><td></td></tr></table>	구분	사 용 료(원)		비 고	1회/1일	1개월	장애인	무 료		1, 2급장애인과 3 급 중 복 장 애 인 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	어린이	1,000	20,000	65세 이상 노인	0	청소년	1,500	25,000	0	성인	2,000	30,000			0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사 용 료(원)</th><th rowspan="2">비 고</th></tr><tr><th>1회/1일</th><th>1개월</th></tr><tr><td>장애인</td><td colspan="2">무 료</td><td rowspan="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td></tr><tr><td>어린이</td><td rowspan="2">1,000</td><td>20,000</td></tr><tr><td>65세 이상 노인</td><td>0</td></tr><tr><td>청소년</td><td>1,500</td><td>25,000</td><td rowspan="2">0</td></tr><tr><td>성인</td><td>2,000</td><td>30,000</td></tr><tr><td></td><td></td><td>0</td><td></td></tr></table>	구분	사 용 료(원)		비 고	1회/1일	1개월	장애인	무 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	어린이	1,000	20,000	65세 이상 노인	0	청소년	1,500	25,000	0	성인	2,000	30,000			0	
구분		사 용 료(원)			비 고																																																
	1회/1일	1개월																																																			
장애인	무 료		1, 2급장애인과 3 급 중 복 장 애 인 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																																																		
어린이	1,000	20,000																																																			
65세 이상 노인		0																																																			
청소년	1,500	25,000	0																																																		
성인	2,000	30,000																																																			
		0																																																			
구분	사 용 료(원)		비 고																																																		
	1회/1일	1개월																																																			
장애인	무 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																																																		
어린이	1,000	20,000																																																			
65세 이상 노인		0																																																			
청소년	1,500	25,000	0																																																		
성인	2,000	30,000																																																			
		0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40호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군산시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41호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

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

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
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
제적 이익

3. <삭제 2017.03.15.>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2017.03.15.>

③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
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 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3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의원이 직무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또는 해당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시의 집행기관 및 시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시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

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 수행

중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

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검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 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 지는 계약 체결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

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 등 직무를 회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군산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군산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

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

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

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

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

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삭제 2017.03.15.>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를 손상한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

⑦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

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의회민원상담관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및 서명
3. 회의내용
4. 자문내용

제32조(수당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회규칙) 의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 다만,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사례금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만, 의원이 의회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견서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일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	-----	--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 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	--	--	--	--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 . ~ . .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13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시 분 ~ 시 분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제13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	----------------------------------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	--------------------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증빙서류 첨부
	반환방법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제7항, 제20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4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20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제20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42호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겸직사항을 별표2**”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 아니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겸직사항 및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산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산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산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 중 “**별표3**”을 각각 “**별표2**”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조 관련)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군산시의회 의원은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숭상수범한다.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존중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별표2]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 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공정성 유지 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등	○ 겸직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신고 위반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6.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7. 회의불참	○ 정당한 이유없이 회기당 3일 이상 결석 할 때	경고, 공개사과
8.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익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익계약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과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2항 관련)

연번	1	검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군산시의회의원 검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검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 상공업 ☐ , 건설업 ☐ , 서비스업 ☐ , 교육 ☐ , 전문직 ☐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군산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군산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검직금지 등) ① (생략)	제9조(검직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u>검직사항을 별표 2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u>	② ----- ----- <u>자영업 등 영리 업무 뿐 아니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검직사항 및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의장은 <u>검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검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⑦ 의장은 <u>검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10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u>군산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u>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신 설>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검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인 등 검직 금지) ①

의원은 군산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산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u>제10조 ~ 제15조</u> (생략) <u>제16조</u>(윤리심사) 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절차 등은 법 제86조부터 제89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3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u>별표3</u>의 징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u>제17조</u> (생략)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u>제12조 ~ 제17조</u> (현행 제10조 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u>제18조</u>(윤리심사) ① ----- ----- ----- ----- ----- ----- ----- ----- ----- ----- <u>별표2</u>를-----. ② ----- <u>별표2</u>----- ----- ----- ----- ----- ----- -----. <u>제19조</u> (현행 제17조와 같음)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43호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수집인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44호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3조(기금의 설치) 시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군산시민 및 시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지역·단체를 포함)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3.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계장

제9조(보고 등) ①기금을 사용하는 기관·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3장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10조(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군산시의회 의원 중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실무기획단

제18조(실무기획단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내에 군산시 남북교류협력 실무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9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 제시

제20조(구성 등) ①기획단의 단장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45호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조에서 제10호를 제4조에서 제9호로 이동하며,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삭제>

4.~9. (현행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
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3항 중 “연2퍼센트”를 “연1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본문 중 “연2퍼센트”를 “연1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 -----.
4. <u>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u>	<u><삭 제></u>
5. ~ 10. (생략)	4. ~ 9. (현행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u>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u>
<u><신 설></u>	<u>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u>
<u><신 설></u>	<u>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u>
<u><신 설></u>	<u>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u>
<u><신 설></u>	<u>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u>
<u><신 설></u>	<u>1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u>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
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
한다.

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
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 자
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2
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
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연3퍼
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상
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
략)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제6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③

----- 1퍼센트-----

-----.

⑤ -----

-----.

5. -----

----- 연1퍼센트-----

-. -----

-----.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
행과 같음)

② 시장-----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
 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46호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경로당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마을에 등록경로당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읍면동장의 확인 후 신청을 통해서만 제1호의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운영비, 연료비, 간식비)을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연료비 및 간식비
2. 경로당 양곡지원
3.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사업비
4.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등록경로당 중 이용인원 감소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기준 미비로 등록경로당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 운영 중인 경로당에 한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 <u>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을 말한다.</u> <u>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u>
<u>제2조 (생 략)</u> <u>제3조(경로당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u>	<u>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u> <u><삭 제></u>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2.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사업비
 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제4조(경로당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마을에 등록경로당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읍면동장의 확인 후 신청을 통해서만 제1호의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운영비, 연료비, 간식비)을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연료비 및 간식비
2. 경로당 양곡지원

3.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사업비

4.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등록경로당 중 이용인원 감소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기준 미비로 등록경로당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 운영 중인 경로당에 한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 제10조 (생략)

제5조 ~ 제11조 (현행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47호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를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를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제2조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등”을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수난구조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산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을 “선박 등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을 “선박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난구조법시행규칙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수난구조"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 -----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
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4. ----- --- 다음 각 목의 사유----- ----- ----- 또는 ----- -----.
<신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신설>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5. "수난구조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	5. ----- (해양경찰관서)----- -----

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6. · 7. (생략)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과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생략)

② 군산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난구호법(이하 "법"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군산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군산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

6. · 7. (현행과 같음)

8. -----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
-----.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상에서
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

----- 선박 등 장비-----
-----.

1. -----
----- 선박 등-----

2. (생 략)

제6조(지급기준) ① (생 략)

②지원금은 "수난구조법시행규칙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산시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제5조에 따른 수난구조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 해양경찰서장 -----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종사업무				
구호 명세	유형	내용			구호 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사용시설 등			
	기타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비안전서장 (인) 소방서장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서장 (인) 소방서장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군 산 시 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청구인 제출서류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					처리절차				
청구서작성 → 접수 → 결제 → 발급 → 신청 → 접수					청구서작성 → 접수 → 결제 → 발급 → 신청 → 접수				
청구인 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군산시장					청구인 해양경찰서 소방서장 해양경찰서 소방서장 해양경찰서 청구인 군산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조례 제1648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찾길사고 동물사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찾길사고 동물사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u>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규칙 제673호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면동”을 “읍면동,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 ----- ----- -----.
1. 군산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1. ----- 읍면동, 의회사무국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군산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규칙 제674호

군산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100만원
2. 우수상은 1창안당 50만원
3. 우량상은 1창안당 30만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부상)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은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u>20만원이상 30만원이하</u> 2. 우수상은 1창안당 <u>10만원이상 20만원미만</u> 3. 우량상은 1창안당 <u>5만원이상 10만원미만</u>	제16조(부상) (현행과 같음) 1. 특별상은 1창안당 <u>100만원</u> 2. 우수상은 1창안당 <u>50만원</u> 3. 우량상은 1창안당 <u>30만원</u>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규칙 제675호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제1항 중 “재정보증을 설정”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2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u>재정보증을 설정</u> 하여야 한다.	제162조(재정보증) ① ----- ----- ----- <u>재정보증보험에 가입</u> -----.
② <u>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u>	<삭 제>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제1항----- ----- ----- -----.
④ (생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3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61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제163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15일

규칙 제676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1항제2호”를 “제15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1항제2호”를 “제15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내용 중 “제12조”를 각각 “제15조”로 하고,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내용 중 “제16조”를 각각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행사명)

수 신 : 군산시장(관광진흥과장)

제 목 :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 락 처		FAX	

☐ 관광객 유치계획

관광유형	관광기간	방문객수		주 요 방문지	인 솔 자	
		내국인	외국인		성명	연락처

○ 숙박 예정 업소명 :

○ 음식점 이용 예정 업소명 :

☐ 국제선교통편 이용계획

관광객 국 적	인원	입 국			출 국		
		출발일 (출발장소)	입국일 (입국장소)	교통편 명 칭	예정일	출국장 소	교통편 명 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시 관광을 실시하고자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관광여행 일정표 1부.
2.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 청 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연 락 처		FAX	

□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유형	관광기간	방문객수		주 요 방문지	인 솔 자	
		내국인	외국인		성명	연락처

□ 국제선교통편 이용실적(외국인관광객 유치시 작성)

관광객 국 적	인원	입 국			출 국		
		출발일 (출발장소)	입국일 (입국장소)	교통편 명 칭	예정일	출국장 소	교통편 명 칭

□ 보상금 신청내역

지급신청액	일금	원(W	원)
산출내역		원 ×	명 × 박
		원 ×	명 × 박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별지 제2-1호서식) 1부.
	2. 여행자 명단(별지 제2-2호서식) 및 관광지 방문 사진첩 1부.
	3. 여행자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보증서 사본 1부.
	4. 숙박확인서(별지 제2-3호서식) 1부. (숙박관광에 한함)
	5. 수학여행단 유치 확인서(별지 제2-4호서식) 1부. (수학여행단 유치에 한함)
	6.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2-5호서식) 1부. (당일관광에 한함)
	7.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 1부. (당일관광에 한함)
	8. 승선(탑승)확인서 1부. (국제선교통편 이용에 한함)
	9. 통장 사본 1부.
※ 공지사항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

□ 신 청 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 락 처		FAX	

□ 관광상품 개발 계획

관광상품명	관광기간	관광코스	군산 체류일정	
			체류기간	방문지역
			박 일	
모객국가	모객인원	홍 보 계 획		
		홍보지역	홍보매체	홍보기간
	명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을 개발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기획서 1부. 2.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신청서

☐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연 락 처		FAX	

☐ 신청내역

관광상품명			
관광코스			
홍보내용	광고 일자 :		
	홍보 매체 :		
	광고 크기(시간) :		
총 비 용	원	신청금액	원
사업기간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홍보의뢰 계약서(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1부
	2. 홍보(광고)물 원본 또는 홍보내용 캡처물 1부.
	3. 통장사본 1부

신 · 구조문 대비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현행	개정안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기준) 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기준) ① ----- ----- - 제15조제1항제1호----- -----.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제15조제1항제2호----- -----.
③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대한 지원은 10명 이상 유치한 경우를 말하며, 1명당 5천원을 지급한다.	③ -- 제15조제1항제3호-----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 제15조제1항제1호----- ----- ----- ----- ----- ----- ----- -----.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조
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대한 지
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5조(지원조건) ① 조례 제12조
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또는 전
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 또
는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킨 조
건을 말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정
한 조건이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
소 이상 관람하며(필수),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
는 군산시 농촌 체험교육장 이
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을 충
족 시킨 조건을 말한다.

③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
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
소 이상 관광하며(필수), 전통
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
- 제15조제1항제1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조건) ① --- 제15조제
1항제1호-----

-----.

② -- 제15조제1항제2호-----

-----.

③ -- 제15조제1항제3호-----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 -----.
제6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 발 지원) 조례 제16조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다.	제6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 발 지원) --- 제19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개정안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시 관광을 실시하고자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제15조----- -----.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 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 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제 15조----- ----- ----- -----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을 개발하
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신청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

-----제 19

조-----

--.

별지 제4호서식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신청서

-----제 19

조-----

-----.

군산시 공고 제2019 - 1002호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년 5 월 15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

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물가안정 도모

2.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에 따른다

나.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① 군산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마. 물가모니터요원 임무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군산시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jk0426@korea.kr

2) 주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7층

3) 팩스 : 063-454-265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63-454-2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붙임참조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창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 위촉할 수 있다.

④ 모니터요원이 제10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9-1003호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용도 근거 마련
- 조선 또는 자동차 기자재·부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보증채원 및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신설 (제6조제1항3호)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6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산업혁신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우)54078
(☎ 063-454-2762, FAX:454-2729)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산업혁신과 미래산업담당(☎ 063-454-2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금 이”를 ““기금” 이”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보증
재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u>기금</u>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 ----- ----- " <u>기금</u> " 이-----.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
1. · 2.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3. <u>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보증재원</u>
3. (생략) ②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9-1004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 1)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허가기준 신설
- 2) 폐차장 및 고물상에 대한 이격거리 등 허가기준 신설

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규정 명확화(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533, FAX. 063-452-8171, 전자우편 : hydro7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전화 063-454-3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

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기준을 따른다

②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폐차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3. **고물상**(「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1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기준 및 도로의 너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원안·조건부수용 된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5]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며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나.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 자연취락지구를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 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다. “하천”이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라.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마. “공공시설”이란 「학교보건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항, 공공청사를 말한다.

바. “문화재”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사.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요도로에서 1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가 다른 경우도 면적 포함)이 될 경우에는 300미터 적용

다.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어촌공사 관리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바. 발전시설 부지내 배수계획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구조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사지를 두어 재해예방을 하여야 한다.

사.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가 다른 경우도 면적 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군산시민(군산시에 계속하여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으로 발전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기준을 50% 완화하며, 본인 소유토지(2년이상 소유)에 신청할 경우 80% 완화 적용.

3. 폐차장 및 자원순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요도로에서 1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대지경계선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2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수목 식재할 것

바. 비가림 시설 설치를 통하여 강우시 빗물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강수가 농수로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사.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9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u> <u>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기준을 따른다</u> <u>②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u> <u>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u> <u>2. 폐차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u> <u>3. 고물상(「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u>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u>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 3. (생략)	<u>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u>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 ----- ----- ----- ----- ----- ----- . 이 경우,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1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	---

군산시 고시 제2019 - 5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5)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5호선)사업에 대하여 군산시 고시 제2019-17(2019.02.01.)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시행중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5호선)사업

나. 명 칭 : 양촌1길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가. 폭 : 당초 17~20m $\Rightarrow$ 변경 17~23m , 길이 : 580m,

나. 면적 : 당초 9,658m² $\Rightarrow$ 변경 10,880m², 녹지 중복결정 : 142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북 군산시 외항로 1245, 군산시 구암로 50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쓰리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0. 04.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고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274-13	장	560	56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
기정	2	구암동	276-24	대	6	6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
기정		조촌동	2-26	장	26,551	1,047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지적 분할 및 구역 오차 정정
변경	3	조촌동	2-26	장	2,276	30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변경		조촌동	2-87	장	24,275	861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	-	-	
기정	4	조촌동	55-1	구	40	4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
기정		조촌동	50-1	구	137	136	군산시	-	-	-	-	구역 오차 정정
변경	5	조촌동	50-1	구	137	109	군산시	-	-	-	-	
기정		조촌동	61	구	284	262	북선제지화학공업 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지적 분할
변경	6	조촌동	61-3	구	262	262	북선제지화학공업 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기정		조촌동	61-2	구	76	3	북선제지화학공업 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지적 분할
변경	7	조촌동	61-4	구	3	3	북선제지화학공업 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기정		조촌동	57	구	244	208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	-	-	-
변경	8	조촌동	57-2	구	208	208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	-	-	-
기정	9	조촌동	704-3	도	716	31	국(국토교통부)	-	-	-	-	-
기정	10	조촌동	36-3	구	1,155	1,155	군산시	-	-	-	-	-
기정	11	조촌동	704	도	584	49	국(국토교통부)	-	-	-	-	-
기정	12	조촌동	7-5	구	1,726	1,726	군산시	-	-	-	-	-
기정	13	조촌동	25-2	구	93	93	군산시	-	-	-	-	-
기정		조촌동	8-2	구	1,627	154	농어촌공사	-	-	-	-	지적 분할
변경	14	조촌동	8-18	구	154	154	농어촌공사	-	-	-	-	
기정	15	조촌동	9-1	답	119	119	군산시	-	-	-	-	-
기정	16	조촌동	10-5	구	635	635	군산시	-	-	-	-	-
기정		구암동	602-2	도	29	25	국(국토교통부)	-	-	-	-	구역 오차 정정
변경	17	구암동	602-2	도	29	29	국(국토교통부)	-	-	-	-	
기정		구암동	272-12	구	2,728	1,530	군산시	-	-	-	-	구역 오차 정정
변경	18	구암동	272-12	구	2,728	1,601	군산시	-	-	-	-	
기정		구암동	276-7	장	694	18	박종인	군산시 구암로 78	(주)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지적 분할
변경	19	구암동	276-25	장	18	18	박종인	군산시 구암로 78	(주)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20	구암동	275-7	도	691	426	군산시	-	-	-	-	구적 오차 정정
변경		구암동	275-7	도	691	567	군산시	-	-	-	-	
기정	21	구암동	278-6	도	73	51	군산시	-	-	-	-	구적 오차 정정
변경	21	구암동	278-6	도	73	73	군산시	-	-	-	-	
기정	22	조촌동	10-6	도	321	234	군산시	-	-	-	-	구적 오차 정정
변경		조촌동	10-6	도	321	321	군산시	-	-	-	-	
기정	23	조촌동	8-10	도	40	40	채규상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 83	-	-	-	-
기정	24	조촌동	8-11	도	53	53	채규상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 83	-	-	-	-
기정	25	조촌동	7-6	도	102	102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	-	-	-
기정	26	조촌동	25-3	도	53	53	고덕영	군산시 조촌동 32	-	-	-	-
기정	27	조촌동	37-4	도	53	51	복선제지화학공업 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지적 분할
변경		조촌동	37-6	도	51	51	복선제지화학공업 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기정	28	조촌동	37-5	도	7	1	고덕영	군산시 조촌동 32	-	-	-	지적 분할
변경		조촌동	37-7	도	1	1	고덕영	군산시 조촌동 32	-	-	-	
기정	29	조촌동	36-6	도	225	225	복선제지화학공업 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
기정	30	조촌동	58	전	334	43	문부철	군산시 신영동 65	-	-	-	지적 분할
변경		조촌동	58-1	전	43	43	문부철	군산시 신영동 65	-	-	-	
기정	31	조촌동	36-8	도	463	247	군산시	-	-	-	-	구적 오차 정정
변경		조촌동	36-8	도	463	252	군산시	-	-	-	-	
기정	32	조촌동	7-7	도	1,031	307	군산시	-	-	-	-	구적 오차 정정
변경		조촌동	7-7	도	1,031	301	군산시	-	-	-	-	
기정	33	조촌동	37-1	답	60	28	군산시	-	-	-	-	구적 오차 정정
변경		조촌동	37-1	답	60	26	군산시	-	-	-	-	
신규	34	구암동	274-12	장	2,474	12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	-	-
신규	35	구암동	276-23	대	15	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	-	-
신규	36	조촌동	2-29	장	625	5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	-	-
신규	37	조촌동	2-30	장	1,863	48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	-	-
신규	38	조촌동	2-32	장	624	27 (2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중복 결정
신규	39	조촌동	55-2	구	56	19 (19)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	중복 결정
신규	40	조촌동	50-5	구	178	71 (71)	군산시	-	-	-	-	중복 결정
신규	41	조촌동	57-1	구	4	3 (3)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	-	-	중복 결정
신규	42	조촌동	36-12	구	68	20 (20)	군산시	-	-	-	-	중복 결정
신규	43	조촌동	704-5	도	7	2 (2)	국(국토교통부)	-	-	-	-	중복 결정
기정	합 계				41,510	9,658						
변경					44,845	10,880 (142)						

※ ()는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면적임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지장물의 표시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조촌동	61	담장	부록담장 1.5m x 10(L)m	1		문부철	신영동65				
				옹벽기초 1m x 10(L)m	1							
			담장	철조망 1m x 8.5m	1							
			감나무	1.5m(H)	1							

군산시 고시 제2019 - 51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8-69(2018.06.01.)호로 인가된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5월 3일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사업

나.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당초 67,032㎡ ⇒ 변경 65,394㎡

가. 도 로(20개 노선) : 당초 49,513㎡ ⇒ 변경 47,809㎡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변 호	폭원 (m)								
기정	결정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군산고228 (‘86.5.23)	
	시행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	
기정	결정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11 (328)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연장 및 면변
	시행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11 (328)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	
변경	결정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09 (326)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09 (326)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1	119	23	집산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1	119	23	집산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1	120	21~27	집산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1	120	21~27	집산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2	65	17~20	집산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군산고242 (2003.4)	별도 시 획 가 행 설 계 인 진 행
	시행	중로	2	65	17~20	집산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	
제외	결정	중로	2	65	17~23	집산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군산고242 (2003.4)	
	시행	중로	2	65	17~20	집산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8 (537)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연장 및 면변
	시행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8 (537)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	
변경	결정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6 (535)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6 (535)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2	144	15	집산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4	15	집산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결정	중로	2	145	15	집산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5	15	집산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2	146	15	집산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6	15	집산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3	74	12	국지도로	49 (4)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4	12	국지도로	49 (4)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3	75	12	국지도로	231 (163)	중로2-142	중로2-142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5	12	국지도로	231 (163)	중로2-142	중로2-142	일반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3	76	12	국지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6	12	국지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도로	-	-	
기정	결정	소로	3	774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4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결정	소로	3	775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5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결정	소로	3	776	6	특수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6	6	특수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결정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 정	결정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 정	결정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 정	결정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나. 주차장(1개소) : 2,012㎡(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주차장	주차장89	조촌동 2-66	2,012	-	2,012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주차장	주차장89	조촌동 2-66	2,012	-	2,012	-	

다. 녹 지(4개소) : 당초 12,474m² ⇒ 12,540m²(도로 중복결정 142m²)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녹지	완충녹지109	조촌동(대2-4번)	2,595		2,595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09	조촌동(대2-4번)	2,595		2,595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0	조촌동(중2-65번)	3,978	증) 51	4,029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0	조촌동(중2-65번)	3,978	증) 51	4,029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1	조촌동(중2-65번)	1,863	증) 15	1,878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1	조촌동(중2-65번)	1,863	증) 15	1,878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2	조촌동(대3-6번)	4,038		4,038 (142)	군산고2014-141 (2014.12.26)	중복 결정
시행	녹지	완충녹지112	조촌동(대3-6번)	4,038		4,038 (142)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라. 공공공지(1개소) : 3,033m²(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33	조촌동2-53	3,033	—	3,033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공공공지	공공공지33	조촌동2-53	3,033	—	3,033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주)디오션시티쓰리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쓰리

5. 사업기간(변경)

- 1차분(당초)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9. 03. 31.
- 1차분(변경)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9. 08. 31.
- 2차분(당초)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 04. 30.
- 2차분(변경)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 04. 30.(변경없음)
- 3차분(변경)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 07.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별도 첨부)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대로 2-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26	장	26,551	347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지적분 할 및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87	장	24,275	347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기정	합 계				26,551	347						
변경					24,275	347						

2) 대로 3-48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26	장	26,551	8,71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지적분 할 및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87	장	24,275	8,646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신규	2	조촌동	2-29	장	625	6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신규	3	조촌동	2-30	장	1,863	1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26,551	8,712						
변경					26,763	8,662						

3) 중로 1-119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35	장	12,705	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41-23	장	9,064	3,99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지적분 할 및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1-23	장	8,163	3,99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3	조촌동	41-30	장	93	9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합 계				21,862	4,091						
변경					20,961	4,091						

4) 중로 1-120

기정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26	장	26,551	10,685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지적분 할 및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87	장	24,275	10,685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기정	2	조촌동	41-23	장	9,064	1,290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지적분 할
변경		조촌동	41-23	장	8,163	1,2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합 계				35,615	11,975					
변경					32,438	11,975					

5) 종로 2-65 (별도 실시계획인가 진행)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274-13	장	560	560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제외		구암동	274-13	장	560	-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2	구암동	276-24	대	6	6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제외		구암동	276-24	대	6	-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3	조촌동	2-26	장	26,551	1,047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제외		조촌동	2-26	장	2,276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합 계				27,117	1,613					
제외					27,117	-					

6) 종로 2-142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3	장	85,561	1,82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2-33	장	85,561	1,82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권리 관계인 변경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기정	합 계				85,561	1,822						

7) 종로 2-143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26	장	26,551	2,02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지적분 할 및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26	장	2,276	1,97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2	조촌동	2-35	장	12,705	3,975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35	장	12,705	3,97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3	조촌동	41-23	장	9,064	2,726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지적분 할 및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1-23	장	8,163	2,72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4	조촌동	41-16	장	29	29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1-16	장	29	29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신규	5	조촌동	2-30	장	1,863	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48,349	8,754						
변경					25,036	8,713						

8) 종로 2-14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366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35	장	12,705	36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12,705	366						

9) 종로 2-145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208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35	장	12,705	20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41-23	장	9,064	1,05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지적분 할 및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1-23	장	8,163	15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조촌동	41-32	장	901	90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21,769	1,262						

10) 종로 2-146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425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변경		조촌동	2-35	장	12,705	425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12,705	425						

11) 종로 3-7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조촌동	2-33	장	85,561	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1	조촌동	2-33	장	85,561	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진주지점)	근저당	권리 관계인 변경
기정		합 계			85,561	9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조촌동	2-33	장	85,561	1,99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1	조촌동	2-33	장	85,561	1,99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진주지점)	근저당	권리 관계인 변경
기정		합 계			85,561	1,991						

12) 종로 3-75

13) 종로 3-76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조촌동	2-35	장	12,705	7,19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1	조촌동	2-35	장	12,705	7,19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12,705	7,194						

14) 소로 3-77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조촌동	2-35	장	12,705	13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1	조촌동	2-35	장	12,705	13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12,705	132						

15) 소로 3-775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13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35	장	12,705	13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12,705	132						

16) 소로 3-776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48	장	171	171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48	장	171	17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171	171						

17) 소로 3-777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58	장	171	171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58	장	171	17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171	171						

18) 소로 3-778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89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35	장	12,705	8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479-12	구	28	28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79-12	구	28	28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12,733	117						

19) 소로 3-779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89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35	장	12,705	8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479-10	구	26	26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79-10	구	26	26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12,731	115						

20) 소로 3-780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91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35	장	12,705	9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479-5	구	23	23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79-5	구	23	23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12,728	114						

(2) 주차장

1) 주차장 89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6	장	1,544	1,54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근저당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66	장	1,544	1,54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근저당	
기정	2	조촌동	479-11	구	468	468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근저당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79-11	구	468	468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근저당	
기정	합 계				2,012	2,012						

나. 공간시설

(1) 녹지

1) 완충녹지109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320-28	장	162	16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구암동	320-28	장	162	16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2	구암동	321-18	대	28	28	군산시					
기정	3	구암동	321-20	대	55	55	군산시					
기정	4	조촌동	2-24	장	2,350	2,350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24	장	2,350	2,35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2,595	2,595						

2) 완충녹지110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274-12	장	2,474	2,47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구적 오차 정정 및 소유자 변경
변경		구암동	274-12	장	2,474	2,345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2	구암동	276-4	대	22	2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구암동	276-4	대	22	2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3	구암동	276-23	대	15	15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구적 오차 정정 및 소유자 변경
변경		구암동	276-23	대	15	1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4	조촌동	2-27	장	842	84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27	장	842	84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5	조촌동	2-29	장	625	625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구적 오차 정정 및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29	장	625	56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신규	6	구암동	274-2	장	8,722	166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투자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	근저당	
									유엔아이대부유한 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4·6층		
									한국산업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주)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시 영등포 은행로 38		
신규	7	구암동	276-22	대	412	15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투자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	근저당	
									유엔아이대부유한 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4·6층		
									한국산업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주)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시 영등포 은행로 38		
신규	8	조촌동	2-28	장	27,901	6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투자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	근저당	
									유엔아이대부유한 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4·6층		
									한국산업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주)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시 영등포 은행로 38		
기정	합 계				3,978	3,978						
변경					41,013	4,029						

3) 완충녹지111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0	장	1,863	1,863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구적 오차 정정 및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30	장	1,863	1,36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신규	2	조촌동	2-88	장	518	518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투자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	근저당		
									유엔아이대부유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4·6층			
									한국산업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주)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기정	합 계				1,863	1,863							
변경					43,330	1,878							

4) 완충녹지112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제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36-12	구	68	68	군산시					중복 결정
변경		조촌동	36-12	구	68	68 (20)	군산시					
기정	2	조촌동	50-5	구	178	178	군산시					중복 결정
변경		조촌동	50-5	구	178	178 (71)	군산시					
기정	3	조촌동	55-2	구	56	56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중복 결정 및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55-2	구	56	56 (19)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4	조촌동	2-32	장	624	624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중복 결정 및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2-32	장	624	624 (2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5	조촌동	41-25	장	457	457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1-25	장	457	45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6	조촌동	41-28	장	2,240	2,240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1-28	장	2,240	2,24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7	조촌동	41-18	장	2	2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1-18	장	2	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8	조촌동	41-19	장	345	34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1-19	장	345	34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9	조촌동	41-22	장	57	57	페이퍼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소유자 변경
변경		조촌동	41-22	장	57	5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10	조촌동	57-1	구	4	4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중복 결정
변경		조촌동	57-1	구	4	4 (3)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기정	11	조촌동	704-5	도	7	7	국토교통부					중복 결정
변경		조촌동	704-5	도	7	7 (2)	국토교통부					
기정	합 계				4,038	4,038						
변경					4,038	4,038 (142)						

※()는 중복결정 면적임

(2) 공공공지 : 변경없음

1) 공공공지 33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제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53	장	3,033	3,033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3,033	3,03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한 사항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48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	597,764.3	-	597,764.3	군산고141 (14.12.26)	-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7,764.3	-	597,764.3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36	-	5,536	0.9	-
	제3종일반주거지역	348,586.3	-	348,586.3	58.3	-
	준주거지역	84,857	-	84,857	14.2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5,577	-	105,577	17.7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3,208	-	53,208	8.9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26	22,348 (7,112)	639,382 (132,657)	3	6,982 (832)	237,794 (19,703)	9	9,853 (2,787)	270,872 (44,669)	14	5,513 (3,493)	130,716 (68,285)
대로	5	18,541 (3,305)	574,678 (71,439)	1	6,314 (164)	221,728 (3,637)	1	7,790 (724)	234,114 (11,397)	3	4,437 (2,417)	118,836 (56,405)
중로	13	3,608 (3,608)	63,458 (59,972)	2	668 (668)	16,066 (16,066)	8	2,063 (2,063)	36,758 (33,272)	3	877 (877)	10,634 (10,634)
소로	8	199 (199)	1,246 (1,246)	-	-	-	-	-	-	8	199 (199)	1,246 (1,246)

※ ()안의 면적은 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4	35~ 41	주간선 도로	6,314 (164)	조촌동 대1-1	광2-2 유원지 구역계	일반 도로	-	군산고228 (‘86.5.23)	
기정	대로	2	4	30~ 33	보조 간선 도로	7,790 (724)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군산고141 (‘14.12.26)	면적변경
변경	대로	2	4	30~ 33	보조 간선 도로	7,790 (724)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군산고141 (‘14.12.26)	
기정	대로	3	6	25~ 31	보조 간선 도로	2,915 (894)	경장동 대1-3	구암동 대2-4	일반 도로	6토지 구획	군산고141 (‘14.12.26)	면적변경
변경	대로	3	6	25~ 31	보조 간선 도로	2,915 (894)	경장동 대1-3	구암동 대2-4	일반 도로	6토지 구획		
기정	중로	2	65	17~ 23	집산 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면적변경
변경	중로	2	65	17~ 23	집산 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기정	대로	3	47	25~ 31	보조 간선 도로	714 (714)	대로3-6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기정	대로	3	48	25~ 31	보조 간선 도로	809 (809)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면적변경
변경	대로	3	48	25~ 31	보조 간선 도로	809 (809)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계 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119	23	집산 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기정	중로	1	120	21~ 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기정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29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기정	중로	2	143	15~ 21.5	집산 도로	846 (846)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면적변경
변경	중로	2	143	15~ 21.5	집산 도로	846 (846)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144	15	집산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5	15	집산 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6	15	집산 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7	15	집산 도로	92 (92)	대로3-47	중로2-148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8	18.5	집산 도로	128 (128)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9)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231)	중로2-142	중로2-142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3	76	12	국지 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3	7	국지 도로	40 (40)	주차장90	중로2-1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4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5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6	6	특수 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 ()안의 연장은 대상지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4	대로2-4	• 면적변경 : 감) 71㎡ -11,468㎡ → 11,397㎡	• 분할측량성과도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대로3-6	대로3-6	• 면적변경 : 증) 12㎡ -15,716㎡ → 15,728㎡	• 분할측량성과도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대로3-48	대로3-48	• 면적변경 : 감) 11㎡ 22,155㎡ → 22,144㎡	• 분할측량성과도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중로2-65	중로2-65	• 면적변경 : 증) 51㎡ 7,994㎡ → 8,045㎡ • 녹지중복결정 (147㎡ → 142㎡)	• 분할측량성과도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중로 2-143	중로 2-143	• 면적변경 : 증) 6㎡ 14,977㎡ → 14,983㎡	• 분할측량성과도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2)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7	주차장	조촌동 2-33번지	701	-	701	군산고141 (‘14.12.26)	-
기정	88	주차장	조촌동 2-42번지	2,174	-	2,174	군산고141 (‘14.12.26)	-
기정	89	주차장	조촌동 2-66번지	2,012	-	2,012	군산고141 (‘14.12.26)	-
기정	90	주차장	조촌동 2-82번지 일원	1,763	-	1,763	군산고141 (‘14.12.26)	-

나. 공간시설

(1) 광장 : 변경없음

(2) 공공공지 : 변경없음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8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2-4번)	3,868	-	3,868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09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2-4번)	2,595	-	2,595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0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65번)	4,016	증)13	4,029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1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65번)	1,878	-	1,878	군산고141 (‘14.12.26)	-
변경	112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3-6번)	4,038	-	4,038	군산고141 (‘14.12.26)	도로 중복결정 (142㎡)
기정	113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1-4번)	1,481	-	1,481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4	녹지	완충녹지	구암천변	3,238	-	3,238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5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 450-15대	2,403	-	2,403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6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143번)	770	-	770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7	녹지	연결녹지	조촌동(대3-47번)	4,529	-	4,529	군산고141 (‘14.12.26)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0	녹지	• 완충녹지 변경 - 면적 : 증) 13㎡	• 분할측량성과도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112	녹지	• 도로 중복결정(147㎡→142㎡)	• 분할측량성과도 결과에 따른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공원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실음 생략

Ⅱ.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실음생략

※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고시 제2019 - 52호

은파관광지(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8-30(2018. 3. 2)호로 고시된 은파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사항과 관련 은파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9년 05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가. 관광지(유원지) :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 나. 은파 수변산책로 : 군산시 미룡동 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은파관광지(유원지)
- 나. 명 칭 : 은파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가. 관광지 면적 : 1,764,095㎡
- 나. 은파 수변산책로 : 데크 광장 676㎡, 데크 산책로 L=1,118m, B=3.0m

4.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 군산시장
-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5. 사업기간 :

- 가. 관광지 : 1985 ~ 2020. 12. 31

나. 은파 수변산책로 : 2017. 11 ~ 2020. 09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가. 사용할 토지 : $6,917.6 / 7,157.6 \times 100 = 96.65\%$

토지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군산시 미룡동	1	산242-9	유	4,165	688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	산242-10	임	806	16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	산242-30	임	87	54						
	4	산242-11	도	6,776	33						
	5	산245-2	유	2,219	70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6	산242-5	유	8,223	668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7	150	유	7,998	46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8	150-1	유	49	9						
	9	831	도로	142	19	국(농수산부)					
	10	156-1	유	988	2						
	11	156-9	유	502	10						
	12	156-5	도로	372	12	군산시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13	산240-9	도로	640	26	군산시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14	9	유	526	15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5	830-4	도로	709	42	국(농수산부)					
	16	13	유	25,425	625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7	59	유	312,221	3,100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군산시 지곡동	18	430-2	유	28,168	375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9	486-2	구거	701	2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0	450	유	1,143	382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1	485	도로	6,232	0.6	국(농수산부)					
계		21필지		408,092	6,917.6						

나. 수용할 토지 : $240 / 7,157.6 \times 100 = 3.35\%$

토지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군산시 미룡동	1	산242-12	임	240	240	선산김씨백암파 옥구종중	김제군 진봉면 사실리 838-4				
계		1필지		240	240						

다. 수용할 지장물

지장물 소재지	구분	지번	종류	수량 (주)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군산시 미룡동	1	산242-12	팽나무	1	선산김씨백암파 옥구종중	김제군 진봉면 사실리 838-4				
계		1주		1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19 - 899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 선정) 공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01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임야를 전(밭갈물 재배, 곤충사육)으로 개간

사업 시행자		개간 대상지				개간시행 계획면적(㎡)	용도
성 명	주 소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김미진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54, 106동 2101호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443-5	임	4,850	2,215	개전

3. 사업비 필요액 : 조성비 1,500천원
4. 사업 예정기간 : 2019. 6. ~ 2019. 7.
5. 공고기간 : 2019. 5. 1. ~ 2019. 5. 30.(30일간)
6. 사업 효과 : 임야를 개간지(전)으로 조성하여 농작물(벼,채소등) 경작 및 곤충사육(꽃뱅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7. 기 타

- 위 토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을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과 농촌개발계(☎063-454-3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2019 - 940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송창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8.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송창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위치 : 군산시 송창동 2-1번지 일원
-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적 : 10,171m²
 - 규모 : 토지 93필지, 건물 19동
- 라. 사업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성명 : 군산시장(안전총괄과)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가. 송창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권리일체(세부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9. 5. 8. ~ 2019. 5. 23.(15일간)
- 나. 열람장소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3)
-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후 보상협의예정

나.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함.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라.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마.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1) 추천요건 : 보상대상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2) 추천기한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3) 추천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바.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5. 기타사항

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 1부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송창동 지구】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송창동	2-1	대	34.0	34.0	박화* 외 5인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3 길 3-6				
2	송창동	2-2	대	9.0	9.0	군산시					
3	송창동	2-3	대	26.0	26.0	박화* 외 5인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3 길 3-6				
4	송창동	2-4	도로	14.0	14.0	군산시					
5	송창동	3-1	대	35.0	35.0	군산시 외 2인					기재부
6	송창동	3-8	대	123.0	123.0	군산시					
7	송창동	3-9	대	71.0	71.0	군산시					
8	송창동	3-10	대	202.0	202.0	최귀*	수송동 77-118 삼학연 립주택 가동 102호				
9	송창동	3-11	대	43.0	43.0	문대*	군산시 송창동 3-11				
10	송창동	3-12	대	16.0	16.0	군산시					
11	송창동	3-13	전	80.0	80.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12	송창동	3-14	대	208.0	208.0	군산시					
13	송창동	3-16	대	342.0	342.0	군산시					
14	송창동	3-17	대	50.0	50.0	군산시					
15	송창동	3-18	대	142.0	142.0	군산시					
16	송창동	3-19	대	106.0	106.0	국 (기획재정부)					군산시
17	송창동	3-20	대	99.0	99.0	전종* 외 1인	군산시 송창동 3				군산시
18	송창동	3-21	전	230.0	230.0	군산시					
19	송창동	3-29	대	221.0	221.0	군산시					
20	송창동	3-30	대	179.0	179.0	군산시					
21	송창동	3-42	대	106.0	106.0	이억* 외 1인					군산시
22	송창동	3-43	대	260.0	260.0	여상*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로17번길 2-29(양동)	남광주 농협	광주 남구 대남대로 169	근저당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면적 (㎡)	편 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23	송창동	3-44	전	118.0	118.0	국 (재정경제원)					
24	송창동	3-45	대	33.0	33.0	김영* 외 7인	군산시 송창동 3				
25	송창동	3-46	대	73.0	73.0	군산시					
26	송창동	3-47	대	33.0	33.0	군산시					
27	송창동	3-48	대	241.0	241.0	군산시					
28	송창동	3-50	대	73.0	73.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29	송창동	3-51	전	33.0	33.0	국 (기획재정부)					
30	송창동	3-52	대	102.0	102.0	군산시					
31	송창동	3-53	대	30.0	30.0	김금*	군산시 선양동 908				
32	송창동	3-54	대	155.0	155.0	차종*	군산시 송창동 3-54				
33	송창동	3-55	대	96.0	96.0	군산시					
34	송창동	3-56	대	50.0	50.0	김삼* 외 6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 관로34다길 53(한남동)				
35	송창동	3-57	대	139.0	139.0	김영* 외 1인	군산시 송창동 3				
36	송창동	3-58	대	53.0	53.0	김영* 외 7인	군산시 송창동 3				
37	송창동	3-59	대	10.0	10.0	김영* 외 7인	군산시 송창동 3				
38	송창동	3-64	대	179.0	179.0	군산시					
39	송창동	3-65	대	53.2	53.2	박병*	군산시 송창동 3-65				
40	송창동	3-66	대	122.0	122.0	군산시					
41	송창동	3-67	대	190.8	190.8	군산시					
42	송창동	3-68	대	301.0	301.0	군산시					
43	송창동	3-69	전	50.0	50.0	김금*	군산시 선양동 908				
44	송창동	3-72	대	132.0	132.0	전진*	군산시 나운동 527 나운 2차 현대@ 209동 203호				
45	송창동	3-74	대	132.0	132.0	군산시					
46	송창동	3-76	대	99.0	99.0	군산시					
47	송창동	3-77	대	333.0	333.0	군산시					
48	송창동	3-79	대	302.0	302.0	군산시					
49	송창동	3-80	대	440.4	440.4	군산시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50	송창동	3-81	대	50.0	50.0	군산시					
51	송창동	3-86	대	136.0	136.0	군산시					
52	송창동	3-87	대	122.0	122.0	군산시					
53	송창동	3-88	대	127.1	127.1	군산시					
54	송창동	3-89	대	149.0	149.0	군산시					
55	송창동	3-90	대	202.0	202.0	군산시					
56	송창동	3-91	대	142.0	142.0	군산시					
57	송창동	3-92	대	149.0	149.0	군산시					
58	송창동	3-93	대	27.7	27.7	군산시					
59	송창동	3-94	전	390.0	390.0	군산시					
60	송창동	3-97	도로	13.0	13.0	정성*	목포시 산정동 1085				
61	송창동	3-104	대	116.0	116.0	전종*	군산시 송창동 3				
62	송창동	3-105	대	43.0	43.0	위성*	이리시 인화동1가 72-36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 가 9-1	근저당	
63	송창동	3-107	대	106.0	106.0	군산시					
64	송창동	3-108	대	66.0	66.0	군산시					
65	송창동	3-109	대	499.3	264.6	군산시					
66	송창동	3-112	대	93.0	93.0	윤옥*	군산시 오룡재길 47-4 (송창동)				
67	송창동	3-113	대	109.0	109.0	군산시					
68	송창동	3-114	대	102.0	102.0	김종*	군산시 송창동 3-68				
69	송창동	3-116	대	236.7	236.7	군산시					
70	송창동	3-117	대	139.0	139.0	군산시					
71	송창동	3-118	도로	7.0	7.0	선영*	군산시 조촌동 783-20				
72	송창동	3-119	도로	3.0	3.0	최세*	군산시 송창동 3-91				
73	송창동	3-120	도로	7.0	7.0	군산시					
74	송창동	3-121	도로	13.0	13.0	군산시					
75	송창동	3-158	전	8.0	8.0	국 (재정경제원)					
76	송창동	3-161	도로	28.0	28.0	군산시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77	송창동	3-170	대	216.0	216.0	군산시					
78	송창동	3-175	전	202.0	202.0	전종* 외 1인	군산시 송창동 3				군산시
79	송창동	3-177	대	127.0	127.0	군산시					
80	송창동	3-178	도로	7.0	7.0	군산시					
81	송창동	3-192	대	32.0	32.0	군산시 외 2인					기재부
82	송창동	3-193	대	46.0	46.0	군산시 외 2인					기재부
83	송창동	3-194	대	29.0	29.0	군산시 외 2인					기재부
84	송창동	3-195	대	1.0	1.0	군산시 외 2인					기재부
85	송창동	3-196	대	34.0	34.0	군산시					
86	송창동	3-197	전	119.0	119.0	군산시					
87	송창동	3-198	전	5.0	5.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88	송창동	3-199	대	5.0	5.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89	송창동	3-200	대	185.1	185.1	군산시					
90	송창동	3-201	도로	19.0	19.0	군산시					
91	송창동	3-203	전	4.0	4.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92	송창동	3-206	대	65.3	65.3	군산시					
93	명산동	22-12	대	55.7	55.7	원유* 외 1인	군산시 송창동 3-57				군산시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	송창동	2-1	가옥	블록, 스투트	89㎡	박화* 외 5인	군산시 옥도면 야 미도3길 3-6	
			개장	목재, 함석	6㎡			
			담장	블록(H=1.5m)	3m			
			대문	함석	1식			
2	송창동	3-1	컨테이너		1식	자율방범 대	군산시 송창동 3-1	
3	송창동	3-10	가옥	조적, 슬라브	60㎡	안경*	군산시 송창동 3-10	
			담장	블록(H=1.5m)	1m			
			대문	철재	1식			
4	송창동	3-12	가옥	블록, 스투트	29㎡	홍삼*	익산시 동산동 599 동신아파트 2동 406호	
			가옥	블록, 함석	31㎡			
			담장	블록(H=2.0m)	15m			
			대문	철재	1식			
5	송창동	3-14	컨테이너		1식	소유자불 명		
6	송창동	3-20	가옥	콘크리트, 슬라브	120㎡	전종*	군산시 서흥남동 850-23	
			창고	판넬, 함석	22㎡			
			창고	판넬, 함석	6㎡			
			수목	1	식			
7	송창동	3-42	가옥	조적, 기와	69㎡	이억* 외 1인	군산시 송창동 3-42	
			창고	블록, 슬라브	10㎡			
			창고	함석	9㎡			
			담장	블록	5m			
8	송창동	3-43	가옥	블록, 스투트	32㎡	여상*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로17번길 2-29(양동)	
			담장	웬스	25m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6주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9	송창동	3-54	가옥	콘크리트, 슬라브	102㎡	차종*	군산시 송창동 3-54	
			담장	조적(H=1.5m)	28m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1주			
			사철나무		1주			
			관상수		1주			
10	송창동	3-57	가옥	블록, 스투트	72㎡	김영*	군산시 송창동 3	
			창고	블록, 스투트	13㎡			
			가추	스레트	15㎡			
			담장	블록(H=2.0m)	15m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3주			
11	송창동	3-65	가옥	블록, 스투트	37㎡	박병*	군산시 송창동 3-65	
			담장	블록	10m			
			대문	철재	1식			
12	송창동	3-72	가옥	블록, 스투트	73㎡	전진*	군산시 나운동 527 나운2차 현대@ 209동 203호	
			화장실	블록, 스투트	3㎡			
			담장	블록(H=1.5m)	26m			
			대문	철재	1식			
			사철나무		1식			
			감나무		1주			
			관상수		3주			
13	송창동	3-79	공중화장실	콘크리트, 슬라브	32㎡	군산시		
			벚나무		4주			
			철쭉		1식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4	송창동	3-90	경로당	콘크리트, 슬라브	43㎡	명 성 경로당		
			창고	콘크리트, 슬라브	7㎡			
			담장	조적	34m			
			대문	철재	1식			
			컨테이너		1식			
15	송창동	3-92	컨테이너		1식	비상 급수시설		
			식수대		1식			
			안내판		2개			
16	송창동	3-10 5	가옥	조적, 슬라브	64㎡	위성*	이리시 인화동1가 72-36	
			담장	블록(H=1.0m)	24m			
17	송창동	3-10 9	가옥	콘크리트, 슬라브	37㎡	소유자불 명	군산시 오룡재길 47-6(송창동)	
			창고	조적, 스텔트	20㎡			
			담장	조적(H=1.5m)	13m			
			대문	철재	1식			
18	송창동	3-11 4	가옥	블록, 함석	38㎡	김중*	군산시 송창동 3-68	
			개장	웬스, 함석	17㎡			
			대문	목재	1식			
19	명산동	22-1 2	가옥	블록, 스텔트	66㎡	원유* 외 1인	군산시 송창동 3-57	
			창고	블록, 스텔트	9㎡			
			화장실	블록, 스텔트	7㎡			
			담장	블록	29m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1주			
			장미		1주			
			관상수		1주			

군산시 공고 제 2019 - 956호

**경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경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군 산 시 장**1.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 수송동 일원
- 다. 하천연장 : 6.16km
- 라. 유역면적 : 21.66km²
- 마. 사업시행자 : 군산시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가. 공개기간 : 2019년 5월 13일 ~ 2019년 5월 26일(14일간)
- 나. 공개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다. 공개내용 : 별첨 참조

3. 의견제출 및 방법

- 가. 제출기간 : 공람일로부터 14일 이내(2019년 5월 26일까지)
- 나. 제출방법 : 군산시 안전총괄과로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다.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4. 기타 자세한 내용

-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포 천 하 천 기 본 계 획 (변 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19. 05



군 산 시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전라북도 군산시 관내 지방하천인 경포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지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며 최근 이상강우에 의한 강우특성 미반영으로 홍수에 대한 치수안전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하천으로 하도 및 수리·수문특성 변화와 하천의 관리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 되었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 경포천에 대하여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개발, 치수경제 및 수질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분석하여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 수자원종합개발 지침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실시근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2】의 “2.개발기본계획 -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바이다.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1.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19. 04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19.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19.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예정)
- 2019. 06 :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 2019.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예정)
- 2019. 07 ~ 08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예정)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공간적 범위

- 시 점 : 군산시 개정면 옥서리 156-31번지
- 종 점 : 군산시 미장동 60-59번지 경포제수문

〈표 1.5 - 1〉 과업의 범위

하천명	시점	종점	유역면적 (km)	하천연장 (km)	과업연장 (km)	비고 (기수립)
경포천 (지방)	군산시 개정면 옥서리 156-31번지	군산시 미장동 60-59번지 경포제수문	21.66	8.92	6.16	2007.12

다. 사업시행자 : 군산시

라. 승인기관 : 전라북도

마. 계획의 내용

(1) 제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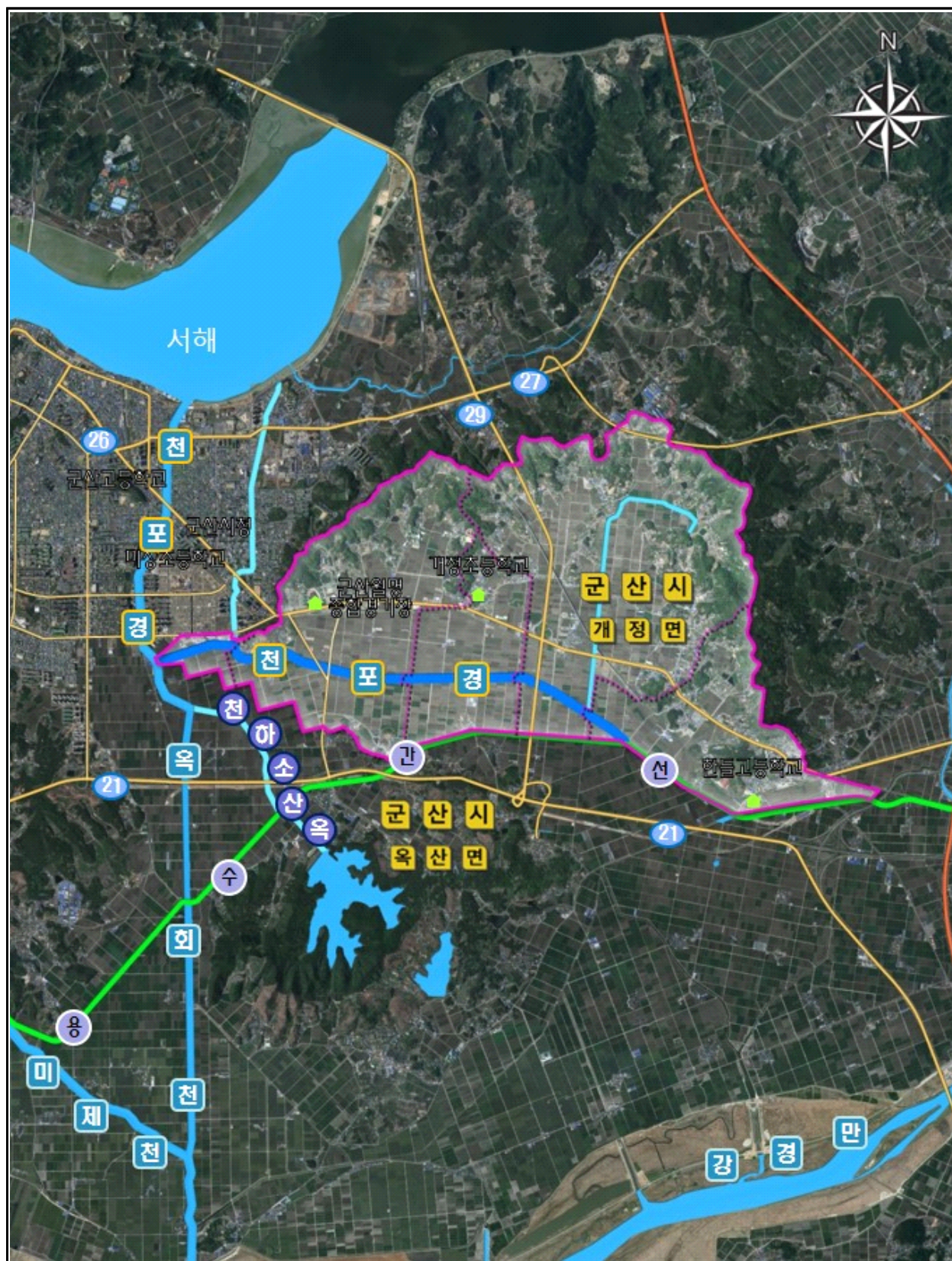
하천명	구분	지구명	구간(No.)	안	연장
경포천	축제	축제좌안1지구	6+390 ~ 12+341	좌	5,951
		축제우안1지구	6+330 ~ 7+278	우	948
		축제우안2지구	7+288 ~ 11+854	우	4,566
		축제우안3지구	11+878 ~ 12+340	우	462
		계	4개지구		11,927

(2) 교량, 보/낙차공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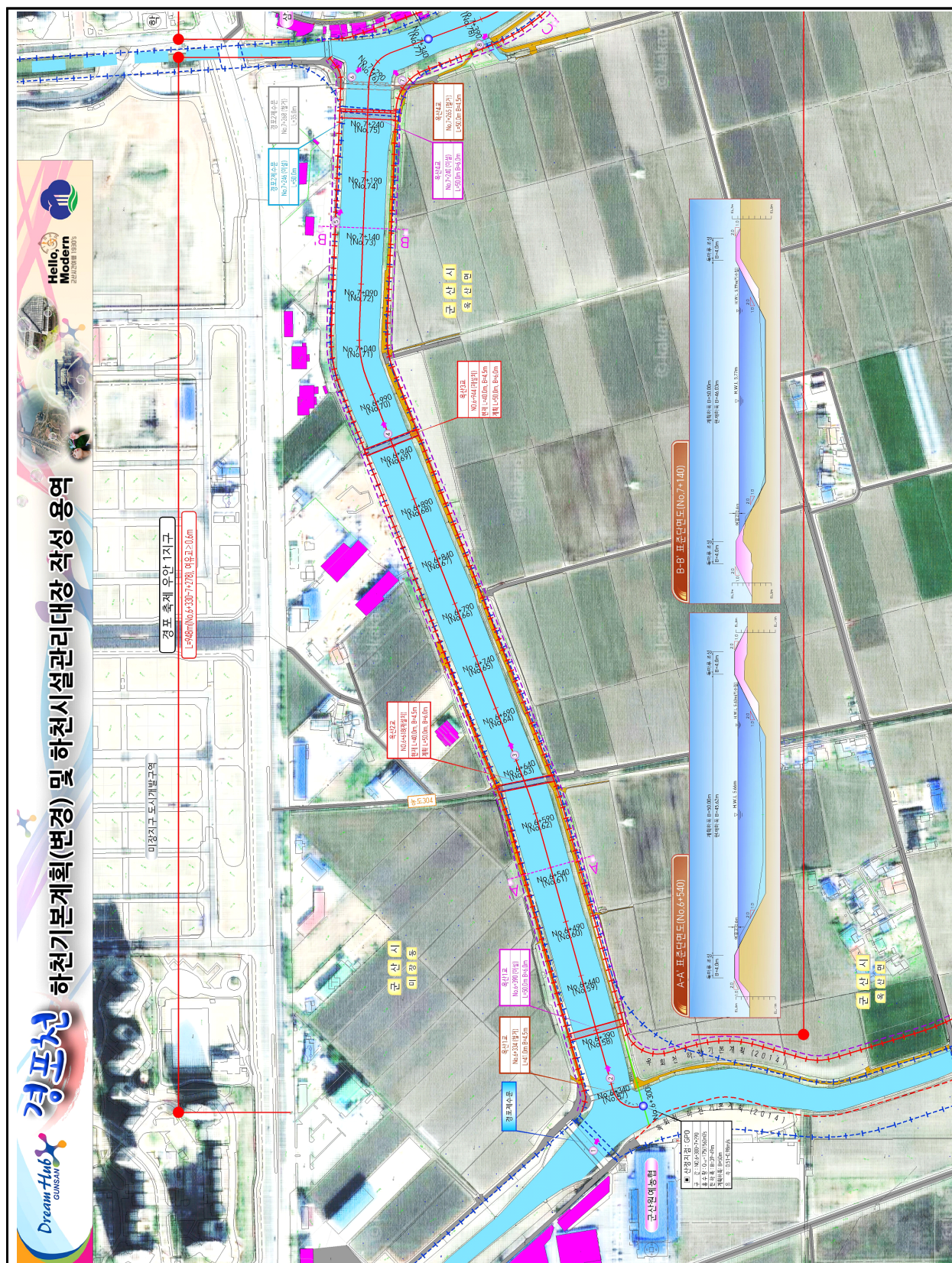
명칭	측점 (NO.)	교량연장 (m)		교량경간장 (m)		여유고 검토 (EL.m)			검토결과	재설치 유무
		교량 연장	계획 연장	현재	기준	교량 형하고	여유고	계획 홍수위		
옥산1교	6+334	40.9	50.0	10.2	15.0	3.90	0.6	5.65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철거
	6+390	-	50.0	-	15.0	-	0.6	5.65	-	이설
옥산2교	6+618	40.0	50.0	10.0	15.0	3.98	0.6	5.68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옥산3교	9+944	40.0	50.0	10.0	15.0	4.18	0.6	5.74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옥산4교	7+240	-	50.0	-	15.0	-	0.6	5.80		이설
	7+265	44.7	50.0	4.5	15.0	4.29	0.6	5.82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철거
옥산5교	7+572	35.8	50.0	9.0	15.0	4.20	0.6	5.89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옥산6교	7+886	36.0	50.0	9.0	15.0	3.80	0.6	5.94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사정교	8+470	37.9	50.0	12.6	15.0	4.21	0.6	6.05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사정1교	8+590	58.2	50.0	50.0	15.0	6.45	0.6	6.007	여유고 부족	재설치
옥산7교	8+946	36.0	50.0	9.0	15.0	4.45	0.6	6.13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옥산8교	9+065	35.8	50.0	9.0	15.0	4.63	0.6	6.15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옥산9교	9+518	31.8	45.0	8.0	15.0	4.56	0.6	6.22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옥산10교	9+979	31.8	45.0	8.0	15.0	4.60	0.6	6.31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북내1교	10+440	42.3	45.0	21.1	15.0	6.33	0.6	6.39	여유고, 연장 부족	재설치
개정1교	10+895	30.0	40.0	10.0	15.0	4.62	0.6	6.48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옥석1교	11+157	48.9	40.0	36.0	15.0	5.80	0.6	6.55	여유고 부족	재설치
옥산교	11+360	27.3	40.0	13.7	15.0	3.82	0.6	6.60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옥석교	11+859	20.3	40.0	6.7	15.0	4.67	0.6	6.73	연장, 여유고, 경간장 부족	재설치
계		총 17개소-15개소 재설치, 2개소 철거 후 이설								

(3) 수문설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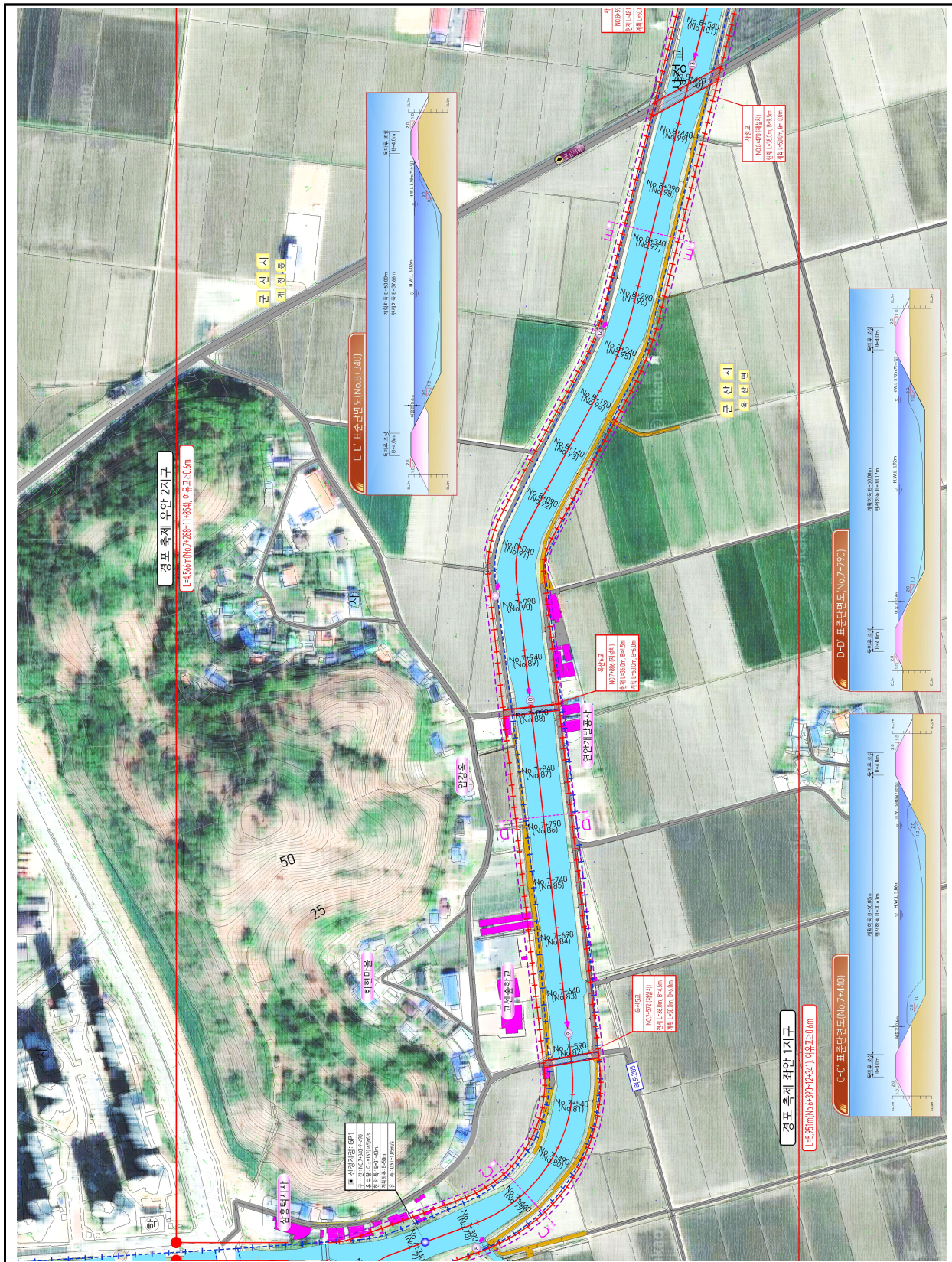
하천명	수문명	측점(NO.)	연장(m)		재설치 유무
			현재	계획	
경포천	경포제2수문	7+268	35	50	이설
	개정제수문	11+305	22	40	재설치
	경포제3수문	12+361	9.5	-	존치



(그림 1.4 - 1) 계획지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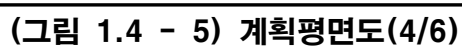
(그림 1.4 - 2) 계획평면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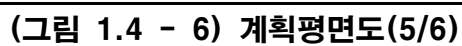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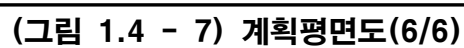
(그림 1.4 - 3) 계획평면도(2/6)



(그림 1.4 - 4) 계획평면도(3/6)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

2.1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5.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22호」 등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2.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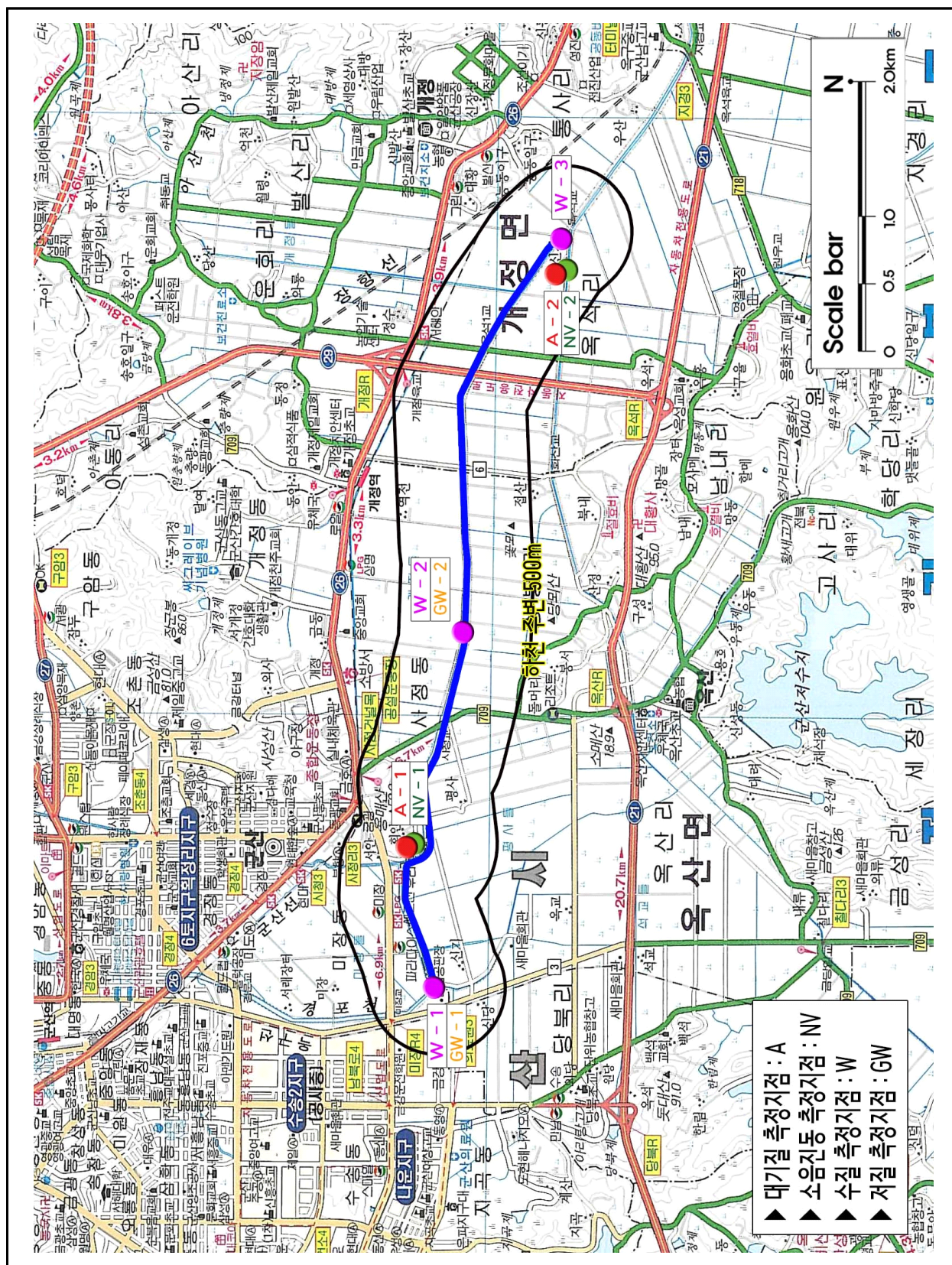
구 분		선 정 항 목		제외항목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수리·수문	—	해양환경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소음·진동	기상, 온실가스, 토양	악취,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인구·주거·산업

2.2 평가범위 및 방법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특성,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환경영향 요인 분석 등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		평가 범위	평 가 방 법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물서식공간의 변화에 따른 생물상 변화 - 동식물 분포현황 및 변화예측 - 종분포, 식생, 녹지자연도 변화예측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 저수지 보강에 따른 지형변화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수환경의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환경 영향 ○ 수문분석 및 유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치수계획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토양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자원·에너지 수환의 효율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건설폐기물, 폐유 및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량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 계획지구	○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계획 및 변화 파악



(그림 2.2 - 1) 대상지역 실태도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검토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
- 대안의 선정은 『환경부고시 제2016-22호 (2016.01.21. 일부개정,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 근거하여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며, 계획의 건전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획비교” 대안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 표 3.1 - 1 > 대안의 종류 및 대안선정 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여부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선 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선 정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1) 계획비교

-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 및 행정계획 수립(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1 - 2> 대안별 비교

구 분	대안 1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때 - No Action)	대안 2 (계획을 수립하였을때 - Action)
토지이용 측면	○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 저하(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 계획시행 후 하천점용허가 재검토 등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수자원 이용측면	○ 계획되지 않는 하천계획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이용	○ 수자원이용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생태계훼손 가능성	○ 생태계변화 없음	○ 공사에 따라 일부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하천지형의 일부 변형은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이 예상됨	○ 계획의 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지역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현상태가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 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 공사장비 및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공사시에 국한된 일시적 영향으로 판단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현상태의 유지로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하천의 공사에 따라 일시적으로 환경기준을 상회 할 수도 있으나, 공사이후 다시 원래의 환경질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대안선정	○ 홍수피해 예방 및 감소, 수자원 확보 및 하천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인근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천정비를 시행(Action)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2) 수단·방법 비교

(가) 홍수량 산정

〈표 3.2 - 2〉 홍수량 산정방법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산정공식	Clark 유역추적법	SCS 무차원 단위도법	Snyder 합성단위도법
내용	◦유역의 도달시간 및 누가면적을 통해 순간단위유도량을 유도하여 유출량을 산정	◦단위도의 첨두유량과 첨두유량의 발생시간을 결정한 후 무차원단위도를 사용하여 합성단위도 산정	◦유역의 특성에 따른 상수와 조정된 지체시간을 입력인자로 하는 2 매개변수 합성단위도 방법
장점	◦유수의 전이효과뿐만 아니라 유역의 저류효과도 고려할 수 있음	◦지체시간만을 매개변수로 하므로 적용이 단순함	◦합성단위도법으로 산정방법이 다른 단위도방법과 비교치로 사용
단점	◦일정규모 이하의 유역에 적용할 경우 저류효과를 산정하는 소유역의 크기가 극소하게 되어 이를 기준하여 적정홍수량을 산정함이 곤란함	◦경가사 매우 완만한 유역에는 적용성이 떨어짐	◦Snyder방법에 의한 홍수량은 다른 단위도 방법에 의한 결과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어 현실적인 적용성이 매우낮음
추천안	◎		
선정사유	◦홍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단위도의 특성에 대한 제어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널리 추천되는 방법인 Clark 유역추적법으로 금회 홍수량을 산정하였음		

(나) 치수계획 기준빈도

〈표 3.2 - 2〉 치수계획 기준빈도

구 분	제 1 안(치수계획 기준빈도 : 50년)	제 2 안(치수계획 기준빈도:20년)
장 점	◦치수 안전도 확보 용이 ◦설계빈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에 부합되는 치수계획 수립가능	◦치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 ◦편입부지 및 공사비 저렴
단 점	◦상대적으로 공사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공사대상지역 증가 ◦치수사업의 규모 증가	◦국지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 ◦최근 설계빈도의 상향적용추세에 미치지 못함
선 정	◎	
선정안	◦공사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크지만 국지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치수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치수계획 및 기준빈도를 50년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4.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계획수립기관인 군산시의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co.kr)에 14일 이상 대상지역의 주민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군산시의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초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일반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하여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20일~40일 이내)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4.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군산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군산시청 및 사업지구 인근의 주민센터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람장소는 군산시와 협의하여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요약서(10쪽 내외)를 별도로 작성하여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

4.4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고, 설명회 장소는 군산시와 협의하여 결정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개최요구가 있고, 개최요구에 대한 법적요건이 충분할 경우 개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시에는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공고를 시행할 것임(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사항에 주민설명회 공고 포함시 별도의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제외)

4.5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군산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토록 할 계획임.

제5장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를 실시하였다.

5.1.1 서면심의 개요

- 심의위원 : 10명(위원장 : 군산시 안전건설국장)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원장	군산시 안전건설국	국 장	박 인 수
위원	새만금지방환경청	과 장	박 대 현
"	군산시 안전총괄과	과 장	임 춘 수
"	군산시 환경정책과	과 장	차 성 규
"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 수	정 승 우
	전북대 생명공학부	교 수	조 민
"	군산대 토목공학과	교 수	김 경 수
	군산시 옥산면	이 장	김 영 석
"	군산시 개정면	이 장	김 광 귀
	군산시 개정동	통 장	강 연 숙

BUY군산, 내고장상품 애용에 동참합시다 !



군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심의 요청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과 관련 환경영향 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서면) 요청하오니 불임(별송)의 심의자료를 검토하시어 2019년 4월 25일까지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 1. 위촉장 및 심의자료 각 1부(별송).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명단 1부. 끝.

군 산 시 장

수신자 환경정책과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 군산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옥산면장, 개정면장, 개정동장



주무관 김성 하천계장 이성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결 2019. 3. 22.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4227 (2019. 3. 22.) 접수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 www.gunsan.go.kr

전화번호 063-454-3852 팩스번호 454-3829 / dolton84@korea.kr / 부분공개(5)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개인정보보호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림 5.1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공문

5.1.2 협의회 심의의견

☑ 새만금지방환경청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로천 하천기반계획(변경)】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경로천(L=6.16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이·치수기능 뿐 아니라 생태계, 수질 등 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하천 건강성을 회복·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 계획하천 및 인근 정온시설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선정 시에는 하천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하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반영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의 지양하여야 하며, 동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도면 포함)하여야 함
3. 대안	○ 대안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야 함 -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가 아닌 하천개수 외 재해방지 및 치수를 위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홍수방어대체 등)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 하천 전구간에 대해 일괄적인 홍수예방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중심으로 알맞은 규모의 치수계획 수립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인접한 구간은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 내 정비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 하상훼손 및 시설물 설치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천 생태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기능성과 생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거를 우선으로 하되, 신설 및 제가설 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분류·작성

☑ 새만금지방환경청 -2

· '입지의 타당성'의 최하위 항목은 중점 10개, 일반 3개, 제외 8개로 조정 · 중점평가항목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지질, 위하·경관,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대기질,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토지이용 · 일반평가항목 : 기상, 온실가스, 토양 · 제외항목 : 약해, 위험·금융보전, 해양환경, 인구, 주거, 산업, 전력장해, 일조량해	
○ 평가범위	- 선정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범위를 설정하되,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평가범위를 확대 - 특히, 동·식물상 조사는 자연 식생이 발달된 산림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에 대하여 생물서식지 파악 등 구체적·중점적으로 실시 - 기상, 대기질, 수질, 동·식물상 관련 조사시기·지점·항목 및 횟수는 계절별, 시간적(수·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선정
○ 평가방법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검토하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제시
항 목	의 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계획과 중수해지검합계획 등 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 ○ 합류하천의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하천 상·하류간 자연스러운 연계가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기존 제방상태, 하천시설물, 토지이용현황, 침수피해 현황, 지형·지질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을 검토·제시 ○ 일괄적인 개수계획을 지양하고, 하폭확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시
자연환경의 보전	○ 과업하천(합류하는 하위수계 포함) 및 주변지역의 범람보호조종 등 동·식물상 조사(생육이 활발한 시기를 선택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 개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중문만 조사 시기,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 사업지역 내 위치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별도관리 지역 등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제시 - 수변식생군락 등 계획구간 내 보전이 필요한 구간의 구체적인 현황 제시

☑ 새만금지방환경청 -3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정비계획 구간과 주변 경관영향 분석(주요 조망점에서 사업시행 전·후 비교) 및 저감방안 제시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상의 대상 여부 검토 ○ 하천유역의 수질오염원 분포, 오염원 관리현황 및 관련계획을 조사(현지조사)하고, 이와 연계한 하천 내 수질관리 대책을 제시 ○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상, 계획 홍수상 산정, 제류홍수위 등) 산정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신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 ○ 축제, 호안정비 등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과거 홍수 이력 등의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 보, 교량 등 장비계획(필요한 시설물은 분개)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시 친환경적 생태공법 적용 - 기존 보 및 낙작공, 교량 설치현황(현상사진 포함)과 존치 및 제거설(신설) 여부,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 - 호안정사를 완만하게 하여, 생태계 단절을 막고 다양한 수변식을 정착 등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호안공법 적용 ○ 상위 수질관리계획(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의 목표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하천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		
생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공사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지역 내 주거밀집지역 분포현황에 따라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 선정평가 및 저감방안 제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하천공간보전·복원·친수자극의 구분은 계획하천의 생태적 환경 및 수질·수리적 특성, 하천 주변 토지이용 현황(농경지, 마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친수지구 조성 시 타당성 및 관련계획 등 구체적인 사유 제시 ○ 과업하천 및 주변지역 토지현황 조사(해피지 내 경작지 현황 등)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

-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

☑ 새만금지방환경청 -4

6. 기 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직 위 :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성 명 : 박 대 현 (인)

☑ 군산시 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하천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자연생태계가 복원될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하천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음으로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류중간에 따른 제방 증축시 생태분리이나 자연사면을 최대한 이용 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안
 - 환경적인 비교분석 : 대안2(계획수립 이행)
4. 평가 항목별위·방법 등
 - 수질 및 수리수문, 동식물상 등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중점검토 항목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주민홍보물 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공사시 주민들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2019. 04. 01.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차 상 규 (인)

☑ 전북대학교 조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에 이견 없음. 관측중측 방법을 일괄적 변경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별위·방법 등
 -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저방 등에 관측중측 방법 변경 필요

2019. 4. 22.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조 민 (인)

☑ 군산대학교 김경수

From: To: 90634543829 25/04/2019 12:22 #275 P.001/00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
 - 공해권과 생태경관도 큰 도입하거므로, 취수보호및기원빈도를 80%이상으로 상향시킨다는 취지함.
4. 평가 항목별위·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19. .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김 경 수 (인)

☑ 군산대학교 정승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경포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검토결과 평가항목 범위 및 방법들이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 부가적인 의견으로 현재 사업대상지역 경포천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이나 기본계획 중 토지이용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비점오염 및 수량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최근 군산시 환경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등 연계성을 면밀히 살펴 볼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의견없음

기타의견: 3쪽, “의금천” 23쪽 “남원시” 등 계획시 곳곳에 오류가 발견됨.

2019. 4. 15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정승우

宇昇
印承

☑ 옥산면 이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적당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당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 관개의 훼손을 최소화 하기 바람
3. 대안
○
4. 평가 항목별위·방법 등
○ 평가항목, 범위, 방법이 적당하게 설정되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없음

2019. 04. 25.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김영식 (인)

☑ 개정면 이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이 적당하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해당지역 계획이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당함
3. 대안
○ 적당함
4. 평가 항목별위·방법 등
○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수렴시 의견 적극 수렴하기 바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환경영향평가 계획 있음

2019. 4. 1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김영식 (인)

☑ 개정동 통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하천과 주민 간에 문제가 적어 적당함
기타사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당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관리적인 이유로 필요 있으므로 계획수립하도록 하셔야 함
3. 대안
○ 주민 요구
4. 평가 항목별위·방법 등
○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가 적도록 해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없음

2019. 04. 25.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김영식 (인)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계 획 명	경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수립자	군산시청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공고 제2019-970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군산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포기각서 제출로 변경등록 미실시한 소재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9. 5. 10.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5. 10. ~ 2019. 6. 10.
2. 공고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3. 송달대상

등록번호 (등록번호판)	기구 명칭	기구 종류	내용	비고
12-01-2007-0001 (75-RB-1006)	경진호	고무보트	등록 직권말소	등록인의 소유권포기

4. 송달내용

- 상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현소유자(사용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시까지 의견 제출 및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직권말소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항만해양과(063-454-2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2020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군산시 공고 제2019-982호

2019/2020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 수산업법 제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2019/2020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수면 번호	어업 종류	양식방법	품 종	면적 (ha)	위 치	개발방법	개 발 조 건
③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	김 등	203	개야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596호) 포기 및 양식재해 보험(김) 가입 조건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⑥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	김 등	50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646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⑦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	김 등	150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700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⑧	복합 양식	혼합양식 (건홍식, 살포식)	해조류, 패류	60	야미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554호) 어촌계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 어업면허 재개발 ※ 기존 어촌계 재개발
⑨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	김 등	70	야미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555호) 어촌계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 어업면허 재개발 ※ 기존 어촌계 재개발
⑩	복합 양식	혼합양식 (건홍식, 살포식)	해조류, 패류	25	비안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으로 한정 면허어업 신규개발 승인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 에 개발
⑪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25	비안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42호) 어촌계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 어업면허 재개발 ※ 기존 어촌계 재개발
⑫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 류	3	무녀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49호) 어촌계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 어업면허 재개발 ※ 기존 어촌계 재개발

⑬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 류	18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314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어촌계 에 개발
⑭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 류	44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76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어촌계 에 개발
⑮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 류	29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77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어촌계 에 개발
⑯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2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으로 한정 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 에 개발
⑰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 류	20	방축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으로 한정 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업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어촌계 에 개발
⑱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 류	20	십이동 파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503호) 기간만료 및 일반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어업권자에 재개발
⑲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 류	20	십이동 파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501호) 기간만료 및 일반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어업권자에 재개발
⑳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 류	20	어청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502호) 기간만료 및 일반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어업권자에 재개발
㉑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 류	10	개야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504호) 기간만료 및 일반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어업권자에 재개발
㉒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 류	3	개야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505호) 기간만료 및 일반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어업권자에 재개발
㉓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40	금강 하구둑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으로 한정 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 에 개발

㉔	복합양식	혼합양식 (건홍식, 살포식)	해조류, 패류	73	비안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678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 에 개발
㉕	복합양식	혼합양식 (건홍식, 살포식)	해조류, 패류	73	비안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678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 에 개발
㉖	복합양식	혼합양식 (건홍식, 살포식)	해조류, 패류	73	비안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678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 에 개발

2. 2019/202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조건

- 어업면허를 처분시에는 수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선박항해 및 어장간 거리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계획이 고시된 수면이나 공익사업으로 폐업보상이 완료된 수면, 각종 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조류소통이 저해되는 수면, 어장이 밀집 되어 어업생산량 저하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 어업분쟁 및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일반면허 및 한정어업 면허(신규개발, 재개발, 대체개발 등)는 관계 기관(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의 개발가능 의견 또는 협의 완료된 건만 면허처분하고 제한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면허기간 동안 자연재해를 입은 수면을 신규개발하거나 재개발 또는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 어장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각종사업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주) 관련 사업, 새만금 내부 개발, 해사토 채취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어업면허 처분시에는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개발하고 면허기간을 최소화하여 처분하는 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양식물의 수급상황, 경쟁력 취약품목, 양식기술 및 종묘확보 등을 사전 검토하여 안정 생산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개발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세부지침을 준용하며, 동 기본지침 행정사항에 의거 추가사항

이 발생 확정시에는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방법

○ 제출기간 : 2019. 5. 13.부터 2019. 5. 30. 18:00 까지

○ 제 출 처 : 군산시청 열린민원과(1층) 접수 창구

○ 신청 및 제출서류

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나.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 (어촌계 기존어장 재배치 포기조건 대체 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타사항

○ 승인된 수면별 어장 위치도는 우리시 수산진흥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군산시 수산진흥과 (☎ 063-454-2912)

2019. 5. 13.

군 산 시 장

